

서 문

본 책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와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지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첨부된 중국 관련 법령에 대한 국문번역은 중국 법을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률해석에 따른 어떤 법적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해설은 중국어 법률이 가장 유효하며 중국소재의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는 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국외안전 보건정보로 들어오시면 전자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안전보건공단

● 차례 ●

1.	산업안전보건제도	1
----	----------	---

2.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적 사항	5
----	----------------	---

(1)	안전생산법	5
-----	-------	---

(2)	직업병 방지법	15
-----	---------	----

3.	산업안전보건 조직	26
----	-----------	----

(1)	안전보건 총괄 기관 및 정부 구조	26
-----	--------------------	----

(2)	중국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28
-----	----------------	----

	부록	33
--	----	----

◆	노동법	35
---	-----	----

◆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49
---	--------------------	----

◆	안전생산법	58
---	-------	----

◆	직업병 예방치료법	75
---	-----------	----

1. 산업안전보건제도

○ 중국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까.

-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은 1994년 7월 5일 통과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총13개장의 10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고용, 근로, 임금, 휴가, 여성, 안전보건,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6장에 나와 있는 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는데,

첫째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입니다. 이 법은 7개의 장으로(97개조문) 되어있으며, 2002년 6월 29일 공포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1장 총칙을 보면 제1조에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방지, 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생산법은(2002.6.29.) 제9차 전인민대회의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동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작업 안전의 미비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제2조에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이 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과 사무 활동에 종사하는 업체(이하 사업체)의 작업안전에 적용된다. 소방, 도로 교통 안전, 철도 교통 안전, 수상 교통 안전에 관한 관련 법률과 행정 규칙에서 다른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방지법으로 2001년 10월 27일 공포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법률로 총 제7장 79개조문으로 구성 되어 직업병에 관련한 자료제공과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직업병 방지법은 노동법의 제6장 근로안전 및 보건규정에 따른 근거에 따라 주석령 제60호(2002년 5월1일)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 되었습니다. 직업병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하게

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직업병 발생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직업병 위험자수, 직업병 환자가 많고, 특히 진폐환자수는 세계 최다를 차지하고 있어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법의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직업병 위해의 예방, 억제 및 제거, 직업병의 방지와 치료, 근로자의 건강 및 관련된 권익 보호, 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활동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 “직업병”이라 함은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경제조직(이하 고용단위라 한다)의 근로자가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 유해 물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직업병의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문과 같이 규정하고 조정하며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생산법과 직업병방지법 외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기타법 또는 규장이 있습니까.

▷ 다음과 같은 법 들이 주요하게 산업안전보건에 적용됩니다.

- 작업안전에 관한 법령
 - 광산안전법,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 노동법, 석탄법, 천연자원법, 노동조합법, 화재통제법, 도로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철도법, 민간항공법, 전기법, 건설법 등이 있습니다.
-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
 -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안전생산허가증조례, 작업안전면허에 관한 규칙, 석탄광산 안전감독에 관한 규칙,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장비의 안전감독에 관한 규칙, 독극물 사용 사업장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칙, 화약 및 폭죽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연화폭죽생산기업안전생산허가증실시방법, 등 각 정부부처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각 지방정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 ▷ 중국정부의 직접 관할 하에 있는 각 성 정부 및 자치지역은 자체 규칙을 채택·제정·이행하지만, 안전생산에 관하여는 중앙정부의 법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각 지방정부에서 조례의 형태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 중국의 안전인증제도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중국의 보호구 검정제도

1) 검정 대상 보호구 : 9개 품목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호복, 안전방망

※ 보호구는 1980년대부터 명문화하여 관리해 오다가 1990년대에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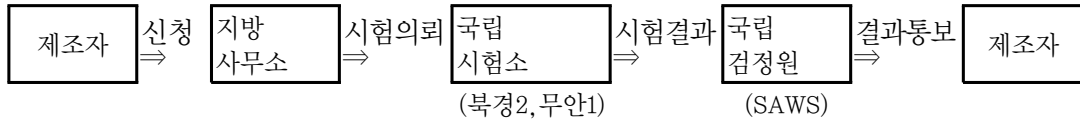
※ 특종(산업재해와 직접 연관이 되는 품목)의 경우 SAWS에서 직접관리하며, 일반적인 용품(직공용 모자, 장갑 등)의 경우 각 성별로 관리함.

2) 보호구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검정기준은 국가 표준인 GB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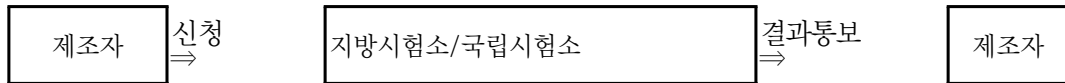
3) 검정방법 : 로트검정

4) 검정절차 : 보호구검정은 제조허가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각 성별로 제조자의 생산조건(품질관리 능력)을 평가를 하게되고 제품에 대한 시험은 지방사무소에서는 지정된 국립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하며 시험결과 적시 SAWS(산하기관 안전과학기술연구센터)에 보고하게 되고, SAWS에서는 제조허가증을 발행함.

○ 신규 검정절차



○ 추가 검정



5) 검정관련 기관

① 국립검정원

- 명칭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國家安全生產監督管理局)
- 주소 : 북경시조양구혜신서가17호(北京市朝陽區惠新西街17号)
- Tel : 0086-10-6494-1276, Fax : 0086-10-6494-7068
- 홈페이지 : www.chinasafety.gov.cn/gtfh/gtfh-0.htm

② 국립시험소(북경)

- 명칭 : 국가노동보호용품질량감독검험센터(國家勞動保護用品質量監督檢驗中心)
- 주소 : 북경시선무구도연정가55호(北京市宣武區陶然亭街55号)
- Tel : 0086-10-6352-0770/6532-4198, Fax: 0086-10-6352-0770

③ 국립시험소(무한)

- 명칭 : 국가노동보호용품질량감독검험센터(國家勞動保護用品質量監督檢驗中心)
- 주소 : 호북성무한시청산구건몰1로56가(湖北省武漢市青山區建設1路56街)
- Tel : 0086-27-8655-1979, Fax : 0086-27-8654-5572

④ 국립시험소(북경2)

- 명칭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안전과학기술연구센터
(國家安全生產監督管理局 安全科學技術研究中心)
- 주소 : 북경시조양구혜신서가17호(北京市朝陽區惠新西街17号)
- Tel : 0086-10-6481-2560, Fax : 0086-10-6491-3298

▷ 중국의 방폭전기기계기구 시험 인증제도

중국의 국가방폭안전감독시험소(NEPSI - Nation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Center for Explosion Protection and Safety of Instrumentation)에서 방폭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시험과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NEPSI는 IECEX에 의해 인정된 국제 시험소이며 정부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기관으로 1985년, 중국 상해에 설립된 국가 방폭 기기 조사 감독 시험소입니다. NEPSI인증은 중국 국가방폭표준규격 (Chinese Standard-GB3836/GB12476)에 의거한 방폭기기에 대한 강제 인증 사항이며 NEPSI는 '상해 자동제어측량기기 검증시험소(SITIIAS)'의 산하기관이며 '적합성 평가를 위한 중국 국가인가서비스 (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 (CNAS))'로부터 감독과 시험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NEPSI는 방폭 기기의 연구 개발, 시험, 검증과 함께 폭발성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장비의 인증 조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비 사용자들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른 방폭 기기의 안전검사와 기술평가를 한다.

중국의 제조업자들은 ATEX인증, FM인증, PTB인증과 같은 국제 인증을 직접 NEPSI로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외국 제조업자들은 FM, PTB 기관으로 NEPSI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적 사항

(1) 안전생산법

1) 목적과 범위

가. 목적과 적용범위

안전생산법이 제정된 목적은 작업장내에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어진 것으로 안전생산 감독관리 강화, 생산안전사고 방지 및 감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 보장, 경제발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되었다(법제1조). 이 법의 적용범위(제2조)는 중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의 안전생산에 적용하고 다

만,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제3조에는 안전생산 관리는 주된 방침이 안전제일, 예방 위주의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생산경영단위를 구분하여 안전생산법과 기타 안전

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 할 의무를 명시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여 안전 생산 책임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여 안전생산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국가의 책임

국가의 책무는 국가가 행하는 책임부분과 공무원이 행하는 부분, 인민정부가 행하는 책임 부분으로 구분하여 명시되어있다. ① 국가의 책임은 국가는 안전생산사고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하고, 이 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안전 사고 책임자에 대한 법률책임을 추궁하도록 하였으며(법제13조), 안전생산에 관한 과학기술연구와 선진기술의 응용보급을 격려하며 지지하여 안전생산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제14조), 안전생산조건의 개선과 안전생산사고의 방지 및 응급구호 참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제15조)을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국무원의 책임(24)은 국무원과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에서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縣級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규정하고있다(제8조). 또한 국무원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관하여 전국의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縣級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의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규정을 두었으며, 국무원은 안전생산 관련사업에 대한 감독관리및 縣級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부서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외에도 국무원은 법에 근거하여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제정하고 생산경영단위(25)에서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안전생산보장의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도록 권장하는 책임이 있다(제10조).

③ 동법 제11조에는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와 안전생산지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의식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2조에는 설립된 안전생산을 위하여 기술서비스를 제

공하는 중개기구는 법률, 행정법규와 작업집행준칙에 의하여 생산경영단위의 위탁을 받아 그 단위의 안전생산작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생산경영단위 책임

생산경영단위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단위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생산경영 단위책임자라 함은 기업내에서 생산활동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경영단위 주책임자의 책임은 동법 제17조에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의 책무라 하여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책임제도 구축 및 보완,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조작규정 조직 및 제정, 안전생산작업 독촉 및 검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 적시 제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구원 예비안의 체계적 마련 및 실시등을 두어 사용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생산교육실시에 관한 책임들을 두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한 안전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①안전생산관리기구의 설치 및 전임안전생산관리자의 선임(제19조)에 관한 규정을 두어 광산, 건축시공단위와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전임안전생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 생산경영단위 중 종사자가 30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전생산관리기구 또는 전임 안전생산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생산경영단위 중 종사자가 300명 이하인 경우는 전임 또는 겸직의 안전생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규정의 관련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기술인원에게 안전생산관리서비스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② 종사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 실시 및 특수작업종사자의 자격증서 취득 의무화(제21조, 제23조)는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는 직책수행 불가, 특수작업종사자는 조작자격증서 취득자만이 직책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③ 안전시설의 설계심사 및 준공검수 강화(제25조~제27조)규정을 두어,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안전조건인증과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광산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하는 건설항목의 준공과 생산투입 또는 사용 전에 반드시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설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 검수에 합격한 후에 생산에 투입,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안전경고 표시설치(제28조)규정을 두어, 위험요소가 큰 생산경영 장소와 관련

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33조에는 중대한 危險源의 관리에 대한 정기측정검사와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폭파, 조립 등 위험작업시에도 안전조치를 두어(제35조), 전문 인원을 배치하여 현장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조작규정의 준수와 안전조치 실시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법 제37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표준 노동방호용품의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생산 관련 근로계약체결(제44조)시에는 근로계약에 종사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고, 工傷사회보험 가입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라. 근로자의 권리

① 직접적인 근로자에 주어진 권리로 근로현장 이탈권이 주어지는데 근로 종사자가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을 정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소를 이탈할 권리 보유하도록 하는 긴급상황시 현장이탈권(제47조)을 두고 있다. 이것은 근로종사자가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을 정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소를 이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28).

② 이외에도 公會(노동조합)가 안전생산에 대한 역할(제52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생산 법률, 법규위반, 종사자의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상황발견시 위험장소에서 철수를 건의할 수도 있고, 사고조사 참가 및 관련자 책임추궁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③ 안전생산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지원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8조, 제69조에는 縣級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에서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당해 행정구역내의 특대생산안전사고 응급지원 대책마련과 응급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단위 및 광산, 건축시공단위는 자체 응급지원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법 제70조~제76조에는 안전생산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규정을 두어 생산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현장관계자와 안전생산 책임자, 당해 지역의 안전생산감독관리기관에서 관련 지방인민정부간에 신속히 사고상황을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2)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정

작업안전에 관련한 안전생산법은 산업현장에서 작업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관련 조직의 의무규정과 작업에 있어 발생한 책임의 한계 또는 그에 따른 안전사고의 조사와 안전예방의 기술 연구 및 예방의 방법 등을 연구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구와 작업 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가. 사업체에서 작업 안전 보증

(가) 안전책임

사업체에서는 안전작업에 관하여 법, 행정 규칙 및 정부 기준 또는 산업 표준 규정에 의한 작업 안전에 대한 조건을 만족(법제16조)하도록 하였으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체는 생산과 사무활동에 참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17조에는 사업체의 최고 경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안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책임을 부과 하도록하고 있다.

- i) 해당 사업체에서 작업 안전에 대한 책임 조직의 구성 및 개선,
- ii) 해당 사업체에서 작업 안전에 대한 기준 제정 및 규칙 운용에 대한 조정,
- iii) 해당 사업체에서 작업 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보장
- iv) 해당 사업체에서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조사 그리고 적시에 작업 안전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 제거,
- v)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체의 구호계획에 대한 규정 제정 및 적용에 대한 조정,
- vi) 상급 정부기관에 작업 안전의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적시에 신뢰성 있는 보고등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 사업체에서 작업 안전에 필수적인 예산을 불충분하게 배정하여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법제18조)하였으며, 작업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나 상근 담당자를 지정(법제19조), 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제공(법제21조), 또한 안전시설에 대한 책임과 설비의 책임, 설비의 제조판매등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법제 24조~제27조)

(나) 유해위험사업에 관한 안전 보호규정

유해 위험사업의 안전표시 장치(법제28조)와 건설장비의 안전품질책임(법제27조)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 장비는 정부 기준이나 산업 표준에 의거하여 고안, 생산, 장착, 사용, 검사, 유지, 개선에 관한 규정(제29조)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유해물질차량에 관한 규정(법제30조)도 있으며, 유해물질을 생산, 판매, 운송, 저장, 사용 및 처분 또는 폐기하는 곳에 관한 정부 기준(법 제32조)도 규정되어 있다.

폭파와 호이스트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체에서는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 기준이 지켜지고 안전 표준이 채택되는지를 보기 위해 특수 전문가의입회(법제35조)규정과 안전교육의 필요성(법 제36조), 산업 표준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사용법을 교육하여야 하고 사용 방법에 맞게 보호구를 착용(법제37조)들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에관한 구조작업의 규정(법 제42조)35)과 사업체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보험에 가입의무규정을 두고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법제43조).

나.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가) 근로계약상의 권리

사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작업 안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에 의해 부과된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시도가 있는 계약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체의 근로자는 자신의 작업장소와 작업 위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 주의 사항과 응급대처 요령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체의 작업 안전에 대한 제안 할 권리를 가지며(법 제45조), 독단적인 명령에 대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46조). 근로자는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근로자가 가능한 응급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장소로부터 탈출할 권리를 갖는다(법 제47조).

(나) 안전작업에 관한 규정

작업 안전 미비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산재에 대한 사회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것에 부가하여, 자신이 일하던 사업체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48조).

근로자는 작업도중 보호를 위한 보호구를 착용(법 제49조)과 사고를 예방하고 응

급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50조), 또한 위험사실에 대한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법 제51조)규정과 노동조합은 감독에 영향을 미치고 건설 공사의 주 구조와 안전 설비의 설계, 건설 및 위임에 대한 조언과 제언을 할 권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52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와 관심에 대한 사업주의 위반 사항과 작업안전에 대한 법률과 규칙 위반을 바로잡도록 사업체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합은 사업주가 규정과 규칙에 반하는 방향으로 지시하거나, 위험 작업에 대한 독단적인 지시, 또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발견한 경우에는 권고나 해결책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견될 때, 노동조합은 위험한 작업 장소로부터 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대피시키도록 사업체에게 권고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체는 즉시 그러한 해결책을 취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고를 담당하는 부처에 권고를 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 소재를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가) 안전작업의 통제

지방의 책임부서는 작업 안전의 조건에 따른 법률기준에 해당하도록 감독하여 중대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고, 책임 부서 유지 및 소관 부처를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53조). 작업 안전에 관한 감독과 통제에 책임이 있는 부처(이하 작업 안전에 관한 감독과 통제를 담당할 부처, 담당 부처)는, 이 법 제9조의 조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승인(승인, 재가, 허가, 등록, 인증과 증명서 또는 면허증 발급)하기 전에 조사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 안전과 관련된 일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법규와 정부 기준 또는 산업 표준에 의거하여 엄격히 점검하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도록(법 제54조)되어있다.

이외에도 승인한 제품이나 작업 안전 장비, 장치 또는 소관 부처에서 승인한 사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법 제55조)가 가능하고, 법률에 의해 작업 안전 업무의 감독과 통제를 담당할 부처가 작업 안전에 관련된 법률과 규칙, 정부 기준 및 산업 표준을 어떻게 적용(법 제56조)하는지에 관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근로감독관제도

근로감독관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체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며, 작업 안전에 대하여 감독과 통제를 담당하고(법 제57조, 제58조), 작업안전감독관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규정하고 있다(법 제58조). 작업안전감독관은 안전보건위반에 대하여 시간, 장소, 항목 및 지적 사항과 해결책이 포함된 서면 감독 기록을 작성하고 감독관과 감독에 참여한 사업체 대표자의 서명을 받으며(제59조),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가진 부처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서로의 지휘와 감독 업무에 협조하도록(법 제60조) 규정하고 있다.

(다) 행정부처의 감독규정

행정부처에서는 안전보건의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관한 감독을 시행 할수 있는 감독 관청을 두어 행정감독법의 조항에 의해 감독관청에서는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1조). 안전과 관련하여 평가, 인증,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부가 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법 제62조), 해당 기관은 자신이 수행한 안전 관련 평가, 인증, 검사 및 감독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가진 부처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법 제63조)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한 보고(법 제64조)와 잠재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방인민정부나 관련 부처에 이 사실을 보고(법제65조)하여야 한다. 이외에 잠재 위험을 신고에 대한 포상(법 제66조)규정과 언론 매체, 출판인, 방송기관, 영화사 및 TV 방송사는 작업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할 의무와 대중 의견을 통해 작업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법 제67조)를 가진다.

라. 재해 구호, 조사 및 처리

(가) 재해구호 규정

중국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상급 지방 인민정부는 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재해가 관할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안전 미비에 의한 예외적인 중대재해인 경우 재해구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응급 재해 구호 제도를 마련(제68조)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 판매 또는 위험물질 저장, 광산 및 건설업의 사업체는 자체적인 응급재해 구조 조직을 구성하며(제69조), 재해 발생에 관한 사업체의 경영진에게 사고를 보고규정과 사업주는 사고를 은폐하거나 허위나 지연 보고를 하거나 사고현장을 손상시키거나 관련 증거를 파괴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있다(법제71조).

(나) 조사보고규정

중국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상급 지방 인민정부가 재해 보고를 받으면 작업 안전에 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가진 부서에 사고보고를 하도록 유도하며(법 제71조), 주요 사고 보고를 받으면 관련 지방 인민 정부나 작업 안전에 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가진 부서의 장은 재해 구호 작업을 조정하기 위해 즉시 현장투입을 통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적시에 재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의 성격과 책임을 명확히(법제73조)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고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 규명과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도 이 법제77조의 조항에 의해 법적 책임에 대해 조사한다(법제74조).

그리고 사업체나 개인 누구도 재해에 대한 법적 조사와 처리에 대해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아니되며(법 제75조), 기초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급 지방 인민정부는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마. 형사처벌규정

안전 위반에 관한 각종 법률 처벌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과 같이 엄격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안전생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제6장),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부문 및 직원의 법률책임(제77조, 제78조, 제92조),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작업 책임기구의 책무위반(제79조), 안전생산 소요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하는 행위(제80조), 생산경영단위 주요책임자의 책임 위반(제81조, 제91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조치 책무위반(제82조~제89조), 생산경영단위 종사자의 안전생산책무 위반(제90조), 안전생산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제95조)등의 산업안전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이 되어있다. 처벌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어 지고 벌금형 일 경우에는 5,000위엔에서 2만 위엔, 또는 5만위엔까지 적용되며,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0만위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 받으며, 각각의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형의 정도가 다

르다고 볼 수 있지만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벌칙내용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안전감독규정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

작업 안전에 관한 감독과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기준과 권한의 범위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업무수행에 관한 책임의 명확성과 아울러 작업 안전과 관련하여 평가, 인증,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허위로 감독 및 조사에 관한 위반사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제77조~제79조). 위반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부당한 이익이 없거나 5천 위엔 이하인 경우에는 5천 위엔 이상 2만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5천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업 안전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보장해 주지 못해 결과적으로 작업 안전에 대한 조건을 미흡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정도의 비용을 제공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며 이 경우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체에게 대하여 생산 및 사무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제80조). 또한 사업주는 이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형법의 조항에 따라 적용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2만 위엔 이상 2십만 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 업무명령의 위반

작업 안전에 대한 통제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법제81조~제83조)와 수행하는 사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업무명령위반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질 생산과 판매시에도 형사처벌에 이루어지며 (법제84조), 생산 및 사무 업무, 작업 장소 또는 장비를 작업 안전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나 개인에게 도급하거나 임대한 사업체(법 제86조)에게도 처벌 규정이 부과 된다.

(다) 심각한 재해유발에 관한 처벌규정

사업체가 작업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을 경감 할 목적으로 근로자와 협약을 맺었을 때는 협약은 무효이고, 사업체의 최고 경영자와 개인 투자자는 2만 위엔 이상 십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

어있다(법제89조). 또한 작업 안전의 미비로 사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즉시 재해 구호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재해 조사가 허위로 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진다(법제91조). 이외에 근로자가 위반사항이 심각하여 중대한 재해를 유발하고 이것이 법적 위반 사항이 되면 근로자는 형법의 조항에 따라 형사상 책임에 대해 조사를 받기도 하는 근로자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법제90조). 이규정은 우리의 무과실책임과 달리 근로자의 책임을 부과하여 준수위반에 관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 사업주 상호간에 산업안전보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해에 대비하자는 의미로 규정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라) 감독에 관한 행정규제위반에 관한 벌칙

작업 안전에 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가진 부서나 관련 지방 인민 정부의 권한 중에 산업안전보건위반에 대한 형사사조사규정이 있는데(법 제92조), 이는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이므로 우리나라와 다른 강력한 행정부서의 기능이기 하지만 현재 중국내에서 법률적용의 실태를 본다고 할 때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동법 제94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 처분은 작업 안전에 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의 권한 범위를 부처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을 적용 한다고 하면 형사조사규정의 내용에 법률에 있음에도 결국은 행정처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직업병 방치법

1) 직업병 방치법의 의의

직업병 방치법은 노동법의 제6장 근로안전 및 보건규정에 따른 근거에 따라 주석령 제60호(2002년 5월 1일)에 따라 시행 되었다. 직업병방치법이 제정되고시행하게 된 상황은 중국에서는 직업병 발생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직업병 위험자수, 직업병 환자가 많고, 특히 진폐환자수는 세계 최다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최근 2000년말 현재 총55.8만건의 진폐병이 발생, 이중 13.3만명이 사망하여 병사율이 23.85%에 이르고 있으며, 진폐환자가 42.5만명이 발생하였으며, 탄광, 야금, 건축재료, 유색금속, 기계, 화공 등의 분야에서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성직업중독이 총 230건이 발생하여 785명이 중독, 169명 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직업병 발생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병방치법을 제정, 2002. 5. 1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 목적과 책임

가. 목적과 용어

목적(제1조)은 직업병 위해의 예방, 억제 및 제거, 직업병의 방지와 치료, 근로자의 건강 및 관련된 권익 보호, 경제발전의 촉진을 도모 하도록 하였으며, 직업방치법의 용어를 보면(제2조, 제77조) “직업병”이라 함은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가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 유해 물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을 지칭하며, “직업병 위해”라 함은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여러 가지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직업병 위해 요소는 직업활동 중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한 화학, 물리, 생물 요소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기타 직업 유해 요소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직업 금기”라 함은 근로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병 위해 요소에 접촉할 때 일반 직업군중에 비해 보다 쉽게 직업병 위해를 받고 직업병에 이환되거나 원래 있던 질병의 상황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작업 종사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건강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수생리 또는 병리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나. 고용단위의 의무와 책임

직업병에 관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업무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근로자가 직업위생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실시(제4조)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체의 고용단위에서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책임제를 구축, 완비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직업병 방지와 치료 수준을 제고하고 당해 단위에서 발생한 직업병 위해에 대하여 책임 부담(제5조)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에서는(제13조)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설립조건과 직업병 위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에 부합하는지 직업병 위해 방호에 상응하는 시설 구비, 생산배치가 합리적이고, 유해작업과 무해작업의 분리원칙에 부합하는지, 탈의실, 욕실, 임산부 휴식실 등의 위생부대시설 구비되어 있는지, 공구나 용구 등의 시설이 근로자의 생리, 심리건강 보호요구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기타 요구등을 규정하여 고용단위에서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3) 직업병 예방조치

가. 직업병 신고제도

직업병에 관련한 예방조치를 위해 직업병의 위해사항에 관한 신고제도(제14조)를 두어 직업병 목록에 열거된 직업병 위해사항과 직업병 위해 항목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병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업은 예비평가 보고서를 제출(제15조)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위생 행정부서는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관련 건설사업 비준이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또한 건설사업에서 직업병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시설을 구비(제16조)하도록 조치하며, 건설사업의 준공 및 검수시에 직업병 방호시설에 대한 위생행정부문의 검수를 통과하여야 사업현장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직업병 관리조치

기업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관한 관리조치(제19조) 규정을 두어 직업위생관리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요소 감소 및 평가 제도를 마련과 함께 직업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병 방호시설 채택 및 근로자 개인 직업병 방호용품 제공(제20조)을 통한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직업병 위해에 관련된 공고란을 설치(제22조)하여 직업병위해요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따라서 직업병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의 예방을 위한 경보방법을 설치(제23조)하여 사전예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성직업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독, 유해 사업장에 대하여 경보장치를 설치규정과 현장 구급용품, 세척설비, 응급비상통로와 필요한 비상탈출지역을 마련함과 동시에 방사능 사업장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수, 저장시 고용단위는 방호설비와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방사선을 접촉하는 작업인원에게 개인 측량기를 지급하여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직업병 위해 설비, 화학물품, 방사능 동위원소 및 방사능 물질 함유재료에 대한 경고조치 등(제25조, 제26조)을 두어 직업병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설비를 제공에 중문설명서를 제공과 동시에 설비의 눈에 띄는 곳에 경고표지와 중문 경고설명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병 위해 발생 가능 설비 및 재료, 작업에 관한 규제(제27조, 제28조, 제29조)조치를 두어 국가에서 사용금지를 명령한 직업병 위해가 발생 가능한 설비

또는 재료를 생산, 경영, 수입 및 사용하는 것 불가 하였으며, 직업병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직업병 방지와 치료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나 이전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4) 직업병 위해요소 검사

가. 직업병 일상검사

직업병위해요소검사는(제24조) 기업에서는 전문인원이 책임지는 직업병 위해요소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스템이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며,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직업병 위해요소 검측,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상검사의 검측, 평가 결과는 고용단위의 직업위생서류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며,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직업병 건강검진실시

직업건강검사의 실시(제32조)는 직업병의 위해요소에 접촉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배치 전과 근무기간 중 또는 일자리를 떠난 후에도 직업건강검사를 조직적으로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건강감호서류의 비치(제33조)를 통하여 개인과 관계된 근로자의 근무경력, 직업병위해접촉경력, 직업건강검사결과와 직업병진료 등 개인건강 자료를 포함하여 보관하고 장기적으로 직업병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제34조) 기업은 즉시 응급구급과 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동시에 소재지 위생행정부서과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며, 위생행정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 통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5) 직업병 진단기구

가. 직업병 진단기구

직업병 진단 기구(제39조, 제40조)는 일정정도 이상의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서 비준한 의료위생기구에서 담당하며, 직업병환자 보고(제43조)를 통하여 직업병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면 이의신청)제도를 두어 직업병진단에 대하여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고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직업병 진단 쟁의는 관계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의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다.

나.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구성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제46조)는 직업병 쟁의에 대한 진단감정이 요구될 때에 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서 관련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관련 위생행정부서에 위탁한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택하는 방식으로 진단감정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를 확정하여 판단한다.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 구성인원의 의무(제47조)을 보면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단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직업병 의심환자가 있는 경우에 조치(제49조)는 의심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고용된 기업에 통지하고 즉시 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직업병 환자의 권리

직업병 환자의 대우 및 권리(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직업병 환자는 일단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 대우를 받도록 하고 기업에서는 치료, 회복 및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직업병에서 벗어나도록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다. 고용기업은 원래의 작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직업병 환자에 대하여 다른 적합한 업무에 배치하며, 고용기업은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당한 작업수당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병 환자의 진료, 치료와 회복 비용, 그리고 장애가 남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공상사회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직업병 환자는 법에 의하여 공상사회보험을 향수하는 이외에 민사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정해져 있다.

라. 위생행정부문의 감독검사 내용 및 권한

위생행정부문의 감독검사 내용 및 권한(제55조)은 縣級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서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국가직업위생 표준과 위생요구에 따라 직

책 구분의 의하여 직업병 방지와 치료작업, 직업병 위해 검사와 평가활동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한 다. 위생행정부문의 감독검사 권리(제56조)는 혈액검사와 직업병 위해 현장에의 진입, 상황파악, 조사증거채취를 통하여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위법행위중지 명령을 내린다.

6) 근로자보호규정

가. 근로자 보호 및 권리

미성년근로자, 임신기간 및 수유기간의 여자근로자 보호(제35조)규정을 보면 고용기업에서 미성년근로자를 직업병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를 불가하며,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여자근로자는 본인과 태아, 영아등에 대하여 위험이 있는 작업에 배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병에 관련한 근로자의 직업위생 보호권리(제4조, 제36조)는 직업위생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료, 회복 등 직업병방지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직업병 위해요소와 위해결과, 취하여야 할 직업병 방호조치를 알 권리를 부여 받고 있다. 또한 고용기업에서 직업병 방지와 치료요구에 부합되는 직업병 방호설비와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방호용품의 제공과 작업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와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고발, 고소를 제기할 권리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병 방호조치가 없는 작업의 실시를 요구하는 규정위반 지휘와 강요를 거부할 권리와 고용기업의 직업위생사업에 참여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사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등이 부여 되고 있다.

나.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위해 고지의무

직업병에 대한 위해 고지의무(제30조)는 고용기업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초빙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및 결과, 직업병 방호조치와 대우 등을 사실대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에 숨기거나 속일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작업분야 또는 작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서명한 근로계약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업병위해가 존재하는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고용기업은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기

업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작업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⁵⁰⁾, 고용기업은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직업위생교육을 실시(제31조)하도록 하여 고용기업의 책임자는 직업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며, 법에 의하여 당해 단위에 직업병 방지와 치료조직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公會(=노동조합)의 직업병 방지 활동 및 권리

公會(=노동조합)의 직업병 방지 활동 및 권리(제37조)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은 직업위생 선전교육과 훈련을 전개하도록 독촉하고, 동시에 협조하고 고용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사업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같이 공동으로 제출하며, 고용기업에 근로자들이 보고하여 관련된 직업병 방지와 치료문제에 대하여 협조를 하고, 해결을 독촉하도록 하고 있다. 공회의 직업병에 관한 권리는 고용기업이 직업병 방지와 치료와 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엄중한 직업병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부 관련부문에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또한 직업병위해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처리에 참가하기도 하며,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위협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고용기업에 근로자들을 위험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수 있다.

7) 위반시 처벌 규정

중국내에서 직업병에 관한 관심도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앞서 지적 하였듯이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사고자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예방을 통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 직업병방지법의 법률을 제정하게 된 동기이며 이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위반시 경고, 기한내 개정 명령부과, 기한내 미개정시 10만위엔 이상 15만위엔 이하의 벌금처벌 대상이 되고, 상황 엄중시 작업중지명령 또는 관련절차에 의해 건설중지와 폐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제62조)는 직업병 위해 예비 평가 보고가 위생행정부문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시공을 한 경우 (제15조), 건설사업

의 직업병 방호시설이 규정에 의한 주된 공정과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시공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제16조), 위생행정부서의 검수를 거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마음대로 사용에 투입한 경우(제16조)에 해당된다.

○ 위반시 경고, 기한내 개정 명령부과, 기한내 미개정시 2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제63조)는 원인 검측과 평가 결과가 보존되지 않고, 상부보고되지 않거나,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제24조),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의한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련 규장제도, 조작규정, 직업병 위해 사고 응급조치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제19조), 근로자직업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지 않거나 근로자 개인의 직업병 방호에 대하여 지도, 독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제31조), 직업병 위해와 관련 있는 화학재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규정에 의한 독성감정재료와 관련부문의 등록 또는 수입 비준 문서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제26조)등이다.

○ 위반시 경고, 기한내 개정 명령부과, 기한내 미개정시 2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제64조)는 사실대로 위생행정부문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16조), 정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제24조), 근로자에게 직업병 위해의 실제 상황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제30조), 검사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제32조)등이다.

○ 위반시 경고, 기한내 개정 명령부과, 기한내 미개정시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대상이 되고, 상황 엄중시 작업중지명령 또는 관련절차에 의해 폐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제65조)는 직업병 위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을 초과한 경우(제13조), 직업병 방호시설과 개인이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직업병 방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이 국가의 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제20조),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 상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 직업병 위해 요소의 검측,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제24조),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제24조), 규정에 의한 직업병 환자와 직업병 의심환자 진료실시를 배려하지 아니한 경우(제49조), 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응급구원과 통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즉시 하지 아니한 경우(제34조), 규정에 의한 엄중한 직업병 위해가 발생할

일자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표시와 中文경고설명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제22조), 위생행정부문의 감독검사를 거절한 경우(제59조)등이다.

○ 위반시 기한내 개정명령, 경고와, 동시에 5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제66조)에는 직업병 위해 발생가능 설비, 재료를 제공하고, 규정에 의한 中文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고 표시와 中文경고설명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제25조)에 해당된다.

○ 고용단위와 의료위생기구가 규정에 의한 직업병과 직업병 의심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제67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생행정부문이 기한내 개정 명령 부과 및 경고를 하고, 동시에 1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허위로 날조한 경우에는 2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위반시 기한내 처리명령 부과와 동시에 3만위엔 이상 30만위엔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되고, 상황 엄중시 작업중지 명령 또는 관련절차에 의해 폐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제68조)는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기술, 공법, 재료를 숨기고 생산에 채용한 경우(제29조), 국가에서 명확히 사용금지를 명령한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설비 또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제27조),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직업병 방호조건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직업병 방호조건이 없는 단위나 개인이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받아들인 경우(제28조), 직업병 방호설비나 응급구원설비를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정지시킨 경우,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 미성년근로자 또는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여자근로자를 직업병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이나 금기 작업에 배치한 경우(제35조), 근로자들이 직업병 방호조치가 없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위반한 지휘를 하거나 강제 명령을 한 경우, 국가에서 사용을 명확히 금지한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있는 설비나 재료를 생산하고 경영하며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제69조).

○ 고용단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제70조, 제71조)은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관련된 인민정부가 폐쇄를 명령하도록 제청하고, 동시에 10만위엔 이상 3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고용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직업병 위해 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하도록 되어있다.

○ 직업위생기술서비스 및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단 불법 종사자에 대한 처벌(제72조)은 위생행정부문에 있어 즉시 위법행위 중지명령 및 위법소득 몰수조치, 위법 소득이 5천위엔 이상이면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천위엔 미만인 경우에는 5천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 엄중시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직업위생기술서비스 종사기구 및 의료위생기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제73조)은 자격인정 또는 비준 범위를 초과하여 직업위생기술서비스 또는 직업건강검사와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 이 법 규정에 의한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의 증명문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이 5천위엔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천위엔 미만인 경우에는 5천위엔 이상 2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근로자 사상 및 사망보고에 관한 법률

중국에 있어서 근로자 안전에 관한 보호규정이 법률로는 정하여져 있지만 특별히 근로자 사상에 관한 보고규정이 미흡하여 정확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무원령을 통하여 근로자 사상사건을 은폐하거나, 보고 조치에 미흡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재해통계를 추산 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따라근로자 안전보호를 하기위한 규정을 제정 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업근로자 사상사고처리보고 및 처리규정으로 만들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 법률적 근거는 기업근로자 死傷사고보고 및 처리규정(국무원령 제75호, 1991. 5. 1일 시행)과 기업근로자 노동안전위생교육관리규정(勞部發 [1995] 405호, 1995. 11. 8)에 근거하여 시행 되고 있다.

1) 주요내용

가. 사상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사항

사업장에 인신상해급성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나 사고현장 관계자는 즉시 기업책임자에게 직접 또는 등급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책임자는 중상

사망·중대사망 등의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기업 주관부문과 기업 소재지 노동부문,公安부문, 인민검찰원, 工會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망·중대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사고현장을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당사자와 재산을 구제하고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나. 사상사고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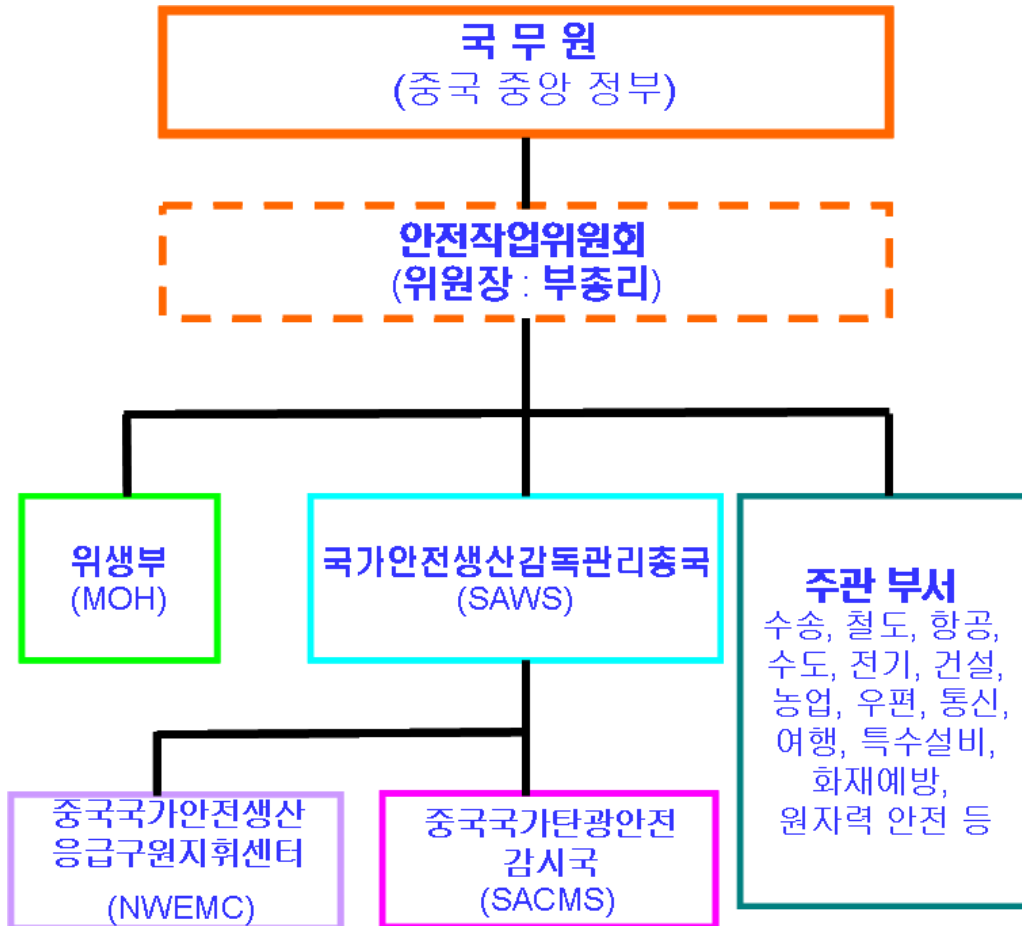
산업재해로 인한 경상 및 중상 사고는 기업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가 생산 및 기술 안전 등 관계자 및 工會구성원등이 참가하여 사고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원 등을 구성하여 산재사고를 조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는 기업주관부문이 기업소재지 내에 설치한 시(또는 구를 설치한 시에 상당한 1급市) 노동부문,公安부문, 工會와 회동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대사망사고는 기업의 소속관계에 따른 성, 자치구, 직할시 기업 주관부문 또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등이 노동부서와,公安부서, 檢察부서, 工會와 합동으로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실시하도록 되어있다.

2)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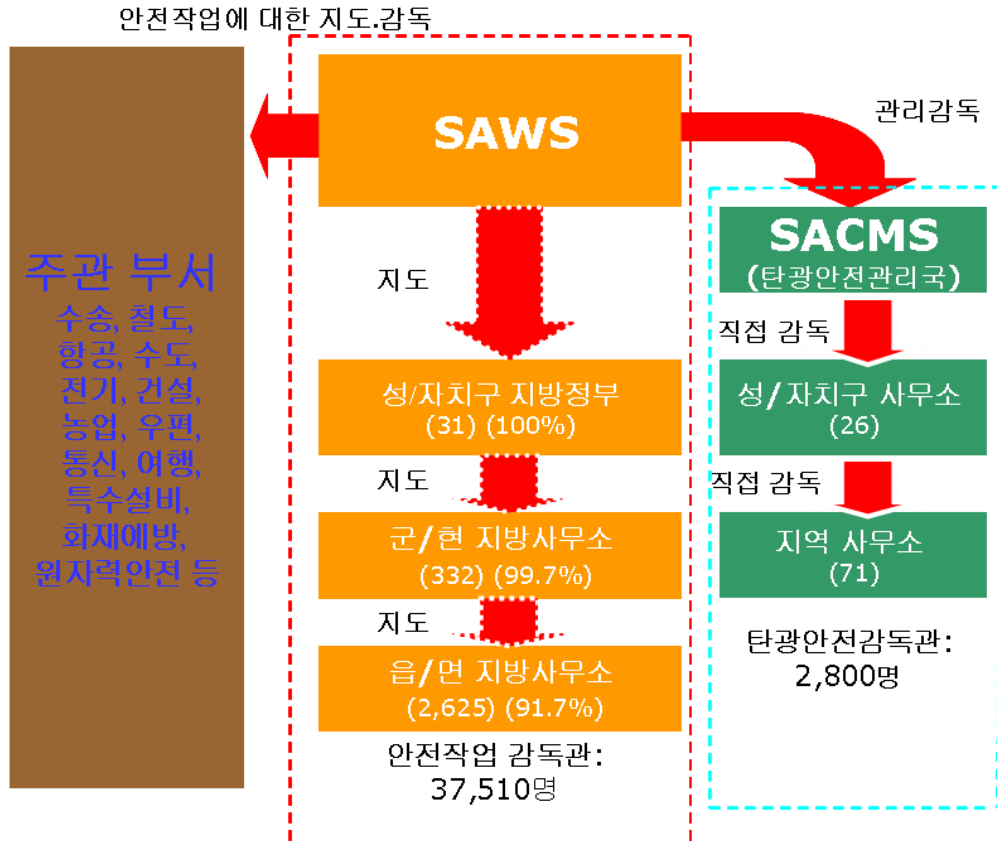
사상사고가 발생한 후 이 규정을 위반하고 사실을 속이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끌면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파괴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과 자료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하여 국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단위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산업안전보건 조직

(1) 안전보건 총괄 기관 및 정부 구조



- 중국의 안전보건 총괄 관리 기관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AWS)로 국무원 직속 산하기관이며, 산하에 중국국가안전생산응급구원지휘센터(NWEMC)와 중국국가탄광안전감시국(SACMS)를 두고 있으며, 위생부를 비롯한 정부의 유과기관과는 상호 지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안전기관 업무 분장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중심으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지방정부를 지도하고 탄광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기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지도 감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안전관련 행정 공무원이 37,510명, 탄광 관련하여는 2,800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중국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1) 기관의 성격 및 규모

- (가) 국무원의 직속기관이자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의 대행기구임
- (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에서 2005년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으로 승격
- (다) 직원: 160명 (국장1명, 부국장 4명, 국가안전생산감찰전문가 14명 포함)

(2) 주요 업무

- (가)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의 사무 역할 수행
- (나) 전국의 안전생산 업무를 종합 감독관리
- (다) 지역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안전생산관리감독 실시, 지역 관련부처에 업무지도, 전국안전생산 발전계획 수립, 전국 안전생산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심각한 문제의 연구 및 해결
- (라) 전국 안전생산 관련 정보 발표, 안전사고 사상현황 통계 및 행정법규 분석 등
- (마) 위험 화학물질 및 폭발물 등의 안전생산 관리 업무
- (바)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안전생산 검사 업무
- (사) 안전 홍보 교육 실시
- (아) 안전 기사 자격 등록제도 실시
- (자) 국무원 및 국무원안전생산위원회의 대행업무

(3) 운영 체계

별도의 직속 사업 단체와 지방자치 단체별 사업 단위로 구분되어 있음
기타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현황은 별첨에 제시함

(4) 조직도



(4) 연락처

- 전화 : (+86) 010- 64463114 (국제협력사)
- 인터넷 : <http://www.chinasafety.gov.cn/>

(5) 관련법령

- 노동법(52조에서 57조까지가 안전보건관련 조항)
- 중국안전생산법(2002.11.1), 제품품질법(2000.9.1), 광산안전법
- 유해위험물질 운반에 관한 법, 유해작업관리에 관한 법
- 해상교통안전법(83. 9. 2), 노동위생의 업계관리에 관한 규정, 조약
- 폭발물관리조례(84. 1. 6), 소방조례(84. 5. 11)
- 전기안전관리규정(86. 10. 7)
- 전기안전노동규정(87. 1. 2)
- 국가기계공업위원회 안전생산노동규정(87. 10. 28)
- 해양석유공급공사의 공업생산노동안전관리규정(90. 12. 1)
- 선박공업 총공사의 임시노동자 및 계약노동자의 안전생산관리의 잠정규정(89. 1. 9)
- 건재공업의 노동보호업무잠정조례(86. 2. 6)
- 경공업의 노동보호조례(80. 5. 4)
- 우편전신의 노동보호관리규정(88. 2. 9) 등 다수

※ 중국의 법령체계

- 중국은 국토가 광대하고 지역간 편차가 심하여 하나의 단일 법률적용이 곤란하여 각 성에서 독자적인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법(전국 인민대표 대회 제정), 조례(국무원 제정), 규정 표준(部 제정)
-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령은 ○○성 ○○조례(성)로 칭함

기관명칭	전화번호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관리중심	64463284
	64294662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국제교류협력중심	64463386
	64463133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문서국(석탄공업문서국)	64463391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광산구원지휘중심	64463298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선전교육중심 (석탄공업전람중심,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당교)	64463641
	64463541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훈련중심 (석탄공업인재교류훈련중심)	64463376
	64276911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연구중심 (중국석탄공업발전연구자문중심)	64463470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통신정보중심 (석탄공업통신정보중심)	64463687
중국안전생산과학연구원	64941372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화학품등기중심	64914670
중국안전생산신문사(중국석탄신문사)	64463048
	64463168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정보연구원 (석탄정보연구원)	84657848
	84612550
석탄총의원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광산의료구호중심)	64662319
	64650108
화베이과학기술원(중국석탄안전기술훈련중심)	61591417
	61591418
중국석탄문공단(중국안전생산예술단)	84282691
	84283488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산업안전보건연구소 (석탄공업산업의학연구소)	69805342
중국탄광노동자 베이파이허요양원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훈련중심베이파이허중심)	0335-4041017
중국탄광노동자파리엔요양원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훈련중심파리엔중심)	0411-2401522
중국석탄노동자 쿤밍요양원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훈련중심쿤밍중심)	0871-4311856
석탄공업산업기능감정지도중심	
석탄종합이용다중경영기술자문중심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기타직속사업단위〉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1	베이징(北京)시	(010) 65023616	http://www.bjsafety.gov.cn/
2	톈진(天津)시	(022) 28450303	http://www.tjsafety.gov.cn/
3	허베이(河北)성	(0311) 87908255	
4	산시(山西)성	(0351) 4094909	http://www.sxsafety.gov.cn/
5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0471) 6291320	http://www.imcoal-safety.gov.cn/
6	랴오닝(遼寧)성	(024) 86902128	http://www.lnsafety.gov.cn/
7	지린(吉林)성	(0431) 5096300	http://www.jlsafety.gov.cn/
8	헤이룽장(黑龍江)성	(0451) 87015800	http://www.hlsafety.gov.cn/
9	상하이(上海)시	(021) 23115300	http://www.shsafety.gov.cn/
10	장수(江蘇)성	(025) 83304292	http://www.jssafety.gov.cn/
11	저장(浙江)성	13588711788	http://www.zjsafety.gov.cn/
12	안후이(安徽)성	(0551) 4673119	
13	푸젠(福建)성	(0591) 87521854	
14	장시(江西)성	(0791) 6268329	
15	산둥(山東)성	(0531) 82881196	
16	허난(河南)성	(0371) 63833782	http://www.hnsafety.gov.cn/
17	후베이(湖北)성	(027) 87127082	http://www.hubeisafety.gov.cn/
18	후난(湖南)성	(0731) 4422561	http://www.hunansafety.gov.cn/
19	광둥(廣東)성	(020) 83324791	http://www.gdsafety.gov.cn/
20	광시(廣西)자치구	(0771) 5856110	
21	하이난(海南)성	(0898) 65333006	
22	충칭(重慶)시	(023) 67511625	
23	쓰촨(四川)성	(028) 86632449	http://www.scsafety.gov.cn
24	구이저우(貴州)성	(0851) 6824213	http://www.gzaj.gov.cn/
25	윈난(云南)성	(0871) 8025614	
26	시장(西藏)자치구	(0891) 6913289	
27	산시(陝西)성	(029) 87291072	
28	간쑤(甘肅)성	(0931) 8826660	
29	칭하이(青海)성	(0971) 6305589	
30	닝시아(寧夏)회족 자치구	13995310108	
31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0991) 2309269	
32	다리엔(大連)시	(0411) 83766878	
33	닝보(寧波)시	(0574) 87264110	
34	시아먼(廈門)시	(0592) 2035555	http://www.xmsafety.gov.cn/
35	칭다오(青島)시	(0532) 83887030	
36	선전(深圳)시	13602673900	http://www.szsaafety.gov.cn/
37	신장(新疆)	(0991) 2358529	

※ 감찰국 각 관리국과 일치

〈성, 시, 자치구 별 안전생산감독관리국현황〉



중국편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부록)

- ◆ 노동법 / 35
- ◆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 49
- ◆ 안전생산법 / 58
- ◆ 직업병 예방치료법 / 75

노동법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 목적)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근로 제도를 수립, 유지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個體經濟組織) (이하 “사용자(用人單位)” 또는 “사업주”라 한다) 및 이들과 노사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이들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근로자 권리) 근로자는 평등한 조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권리, 직업선택권, 근로의 보수를 취득할 권리, 휴식 및 휴가의 권리, 근로 안전 보건의 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능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 및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 노동쟁의의 처리를 청구할 권리 및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임무를 완수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며 근로안전, 위생보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사용자 의무) 사용자는 법에 의거하여 규정 및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가 근로권리를 누리고, 근로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의 조치) 국가는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며 근로기준을 정하고 사회소득을 조절하며 사회보험을 완비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며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한다.

제6조 (국가의 지원 및 장려) 국가는 근로자의 사회의무노동 참여를 고취시키고 노동경시대회 및 합리적인 건의활동을 전개하며, 근로자의 과학적인 연구, 기술혁신, 창의적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우수근로자를 표창, 시상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직) 근로자는 노동조합(工會)에 가입하고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수호하며 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제8조 (민주관리 혹은 협상의 참여) 근로자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회(職工大會), 근로자대표대회(職工代表大會) 또는 여타 형식을 통하여 기업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등한 협상을 진행한다.

제9조 (노동업무 담당부서) 국무원 노동행정부서는 전국의 노동업무를 주관한다.

현급(縣級)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노동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취업 촉진

제10조 (국가의 고용지원) 국가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여 고용조건을 마련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국가는 기업, 공공사업기관, 사회단체가 법률 및 행정 법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경영을 확장하여 고용을 촉진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취업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1조 (직업소개업체의 발전)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직업소개기관 및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용평등) 근로자는 취업을 함에 있어 민족, 종족, 성별, 종교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남녀평등 고용)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부에서 규정하는 여성에게 부적합한 직종 또는 직무 이외에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의 채용기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특수인원의 고용) 장애인, 소수민족, 퇴역군인의 취업에 있어 법률, 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미성년 고용금지와 특수업종의 규정)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을 금지한다.

문예, 스포츠, 특수 공예 분야에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심사 및 허가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제16조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근로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과 변경) 근로계약의 체결, 변경은 반드시 평등, 자율, 쌍방합의

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은 법에 의하여 체결되는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근로계약
2. 사기, 협박 등의 수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무효의 근로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근로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함이 확인되었으나 여타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여타 부분은 효력을 가진다.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勞動爭議仲裁委員會)나 인민법원에서 판단한다.

제19조 (계약형식과 조항) 근로계약은 서면형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계약기한
2. 작업내용
3. 근로보호와 근로조건
4. 근로보수
5. 노동규율
6. 근로계약의 종료조건
7.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

근로계약은 전호에 규정한 필수적 조항 외에 당사자가 협상하여 기타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기한) 근로계약의 기한에는 고정기한이 있는 경우, 고정기한이 없는 경우, 일정 작업 완수를 기한으로 하는 경우 등 세 가지가 있다.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用人單位)에서 만 10년 이상 연속 근로하고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할 경우 근로자가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용기 약정) 근로계약은 시용기간(試用期)을 약정할 수 있다. 시용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상업기밀사항 약정) 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용자의 상업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약정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종료) 근로계약이 만기되었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 종료조건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은 즉시 종료된다.

제24조 (계약해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경우 해지될 수 있다.

제25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용기간 중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증명된 자
2. 노동규율 또는 사용자의 규칙제도를 크게 위반한 자
3. 직무상의 과실, 부정행위로 사용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4.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의 추궁을 받는 자

제26조 (사용자 계약해지의 사전통지기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0일 전에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업무외적인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기타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훈련 또는 직무변경 후에도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의 객관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 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계약 변경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제27조 (감원) 사용자의 도산에 의한 법정 정리기간이거나 생산경영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한 후 감원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 조항 규정에 의하여 감원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감원된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28조 (경제보상) 이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는 정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자의 계약해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 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직업병 또는 업무로 인해 입은 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있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사항

제30조 (노동조합의 직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사용자가 법률, 법규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다시 처리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제소할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근로자 계약해지의 사전통지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근로자의 계약해지 통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인 경우
2. 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약정한대로 근로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단체협약) 기업의 근로자 측은 근로보수, 근로시간, 휴식휴가, 근로안전보건, 보험복지 등과 관련하여 기업 측과 단체협약(集體合同)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협약 초안은 직공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맡겨 토의, 채택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기업과 체결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가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34조 (단체협약 효력발생) 단체협약은 체결 후 노동행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행정부서가 단체협약 내용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단체협약의 효력) 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과 기업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근로자 개인이 기업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근로조건과 근로보수 등의 기준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것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휴가

제36조 (국가의 근로시간제도) 국가는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평균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

제37조 (보수기준과 근로기준량의 확정) 사용자는 작업량 계산방식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 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제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량과 보수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최소 휴식일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당 최소 1일간 휴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근로 및 휴식방법의 대체) 기업이 생산 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거쳐 기타 작업 및 휴식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제40조 (법정휴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명절기간에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양력설(元旦)
2. 음력설(春節)
3. 국제노동절(國際勞動節)
4. 국경절(國慶節)
5. 법률, 법규로 규정된 기타 휴일

제41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용자는 생산,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상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1일 3시간, 매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41조가 정하는 제한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 건강과 재산,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여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2. 생산설비, 교통운수 노선, 공공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여 생산 및 공공 이익에 영향을 주어 긴급히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법률, 행정법규로 규정된 기타 사항

제43조 (근로시간의 위법연장 금지) 사용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44조 (연장근로의 보수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상 근로시간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의 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2. 휴식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고 보상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임금의 200% 이상의 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3. 법정 휴가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임금의 300% 이상의 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5조 (유급연차제도) 국가는 유급연차휴가제도를 실시한다.

근로자가 1년 이상 연속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5장 임금

제46조 (임금분배원칙) 임금분배에 있어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원칙을 따라야 하며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에 따라 임금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국가는 임금총액에 대해 거시적인 조절 및 통제를 실시한다.

제47조 (임금분배 방식과 임금수준의 확정) 사용자는 자체의 생산, 경영 특성과 경제효율에 의거하여 법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임금분배방식과 임금수준을 정한다.

제48조 (최저임금보장) 국가는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기준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가 정하며, 국무원에 등록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해당 지역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49조 (최저임금기준의 참고사항) 최저임금기준을 정하고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본인 및 평균 부양인구의 최저생계비
2. 사회평균임금수준
3. 노동생산성
4. 취업상황
5. 지역 간 경제발전수준의 차이

제50조 (임금지급형식) 임금은 통화(貨幣)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 공제하거나 또는 이유 없이 연체해서는 안 된다.

제51조 (법정휴가일과 경조휴가 기간의 임금보장) 근로자의 법정휴가일, 경조휴가 기

간 및 법에 의거하여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근로안전 및 보건

제52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근로안전보건제도를 확립하고 국가 근로안전보건 규정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근로자에게 근로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상의 위험 및 상해를 감소시켜야 한다.

제53조 (근로안전보건시설기준) 근로안전보건시설은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신축, 개축, 증축 공사의 안전 및 보건시설은 주요 공사와 동시에 설계, 시공하고 동시에 생산,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 (근로자 근로안전 및 건강보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근로안전 보건조건과 필수적인 작업보호 용품을 제공하며 작업상 위험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 (특수작업 자격) 특수작업(特種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수작업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6조 (작업 중 안전보호) 근로자는 근로과정 중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 측 관리자의 규정에 위반되는 지휘, 위험작업 강요 명령에 대하여 작업거부의 권리를 가지며 생명의 안전과 신체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 고발, 고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 (사상사고와 직업병의 통계, 보고 및 처리제도) 국가는 사상사고 및 직업병에 대한 통계 및 보고, 처리 제도를 수립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행정 부서와 관련부서 및 사용자는 근로과정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상사고와 직업병 상황에 대하여 통계, 보고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여성근로자와 미성년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제58조 (여성근로자와 미성년근로자의 특별 근로보호) 국가는 여성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 특별 근로보호를 실시한다.

“미성년근로자”란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제59조 (노동강도 제한) 여성근로자의 갱내근로, 국가가 정하는 제4급 육체노동강도

의 근로 및 기타 여성에게 부적합한 작업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을 금한다.

제60조 (생리기간 노동강도 제한) 생리기간 중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저온작업, 냉수작업 및 국가가 정하는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제61조 (임신기간 노동강도 제한) 임신기간에 국가가 정하는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근로와 임신부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작업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연장과 야근을 금한다.

제62조 (출산휴가) 여성근로자는 출산 시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 (수유기 근로보호)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수유하는 기간 중 국가가 정하는 제3급 육체노동 강도의 근로와 수유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근로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근로시간연장과 야근을 금한다.

제64조 (미성년근로자의 노동보호) 미성년근로자의 갱내작업과 유독·유해 작업, 국가가 정하는 제4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 및 기타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작업을 금한다.

제65조 (미성년근로자의 건강검진) 사용자는 미성년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직업훈련

제66조 (발전목표) 국가는 각종 방법 및 조치를 실시하여 직업훈련사업을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기능 및 자질을 향상시키며 취업능력과 업무능력을 강화한다.

제67조 (정부지원) 각급 인민정부는 직업훈련발전계획을 사회경제 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조건을 갖춘 기업, 공공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개인이 각종 형태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후원하여야 한다.

제68조 (직업훈련) 사용자는 직업훈련제도를 확립하고 국가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경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직 근로자는 작업배치 전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직업기능자격) 국가는 직업분류 유형을 정하고 해당 직업의 기능기준을 제정하여 직업자격 증서제도를 실시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기능심사 및 감정은 정부가 인가한 심사감정기관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9장 사회보험 및 복지

제70조 (발전목표) 국가는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며, 사회보험 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가 노화, 질병, 업무상의 재해, 실업, 출산 등 상황에서 지원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71조 (협상발전) 사회보험 수준은 사회경제 발전수준과 사회수용 능력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72조 (기금출처)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유형에 의하여 자금원을 확정하고 사회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 (사회보험 혜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사회보험혜택을 받는다.

1. 정년퇴직
2. 질병 및 부상
3. 업무상의 재해 또는 직업병
4. 실업
5. 출산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은 법에 의하여 유족수당을 받는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격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로 정한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금은 적시에 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 (사회보험기금 관리) 사회보험기금 운영기관은 법에 의하여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수입, 지출관리, 운영을 담당하며 사회보험기금의 가치보전 및 증가의 책임을 진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수입, 지출관리, 운영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운영기관과 감독기관의 설립 및 직능은 법률로 정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기금을 유용할 수 없다.

제75조 (보충보험과 개인저축보험) 국가는 사용자가 자기 실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보충보험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근로자 개인의 저축성 보험가입을 권장한다.

제76조 (국가와 사용자의 복지사업 발전책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복지시설을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휴식, 휴양 및 요양 조건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고, 복지대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장 노동쟁의

제77조 (노동쟁의 처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조정, 중재, 제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조정원칙은 중재와 소송절차에도 적용된다.

제78조 (쟁의해결의 원칙) 노동쟁의를 해결함에 있어 합법, 공정, 적시처리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에 의하여 노동쟁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9조 (조정과 중재) 노동쟁의 발생 후 당사자는 당해 사업장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에 실패하여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 역시 직접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80조 (노동쟁의조정위원회 및 조정협약) 사업장 내에 노동쟁의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로 구성한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主任)은 노동조합의 대표가 맡는다.

노동쟁의에 대하여 조정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1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서의 대표, 동급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측 대표로 구성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행정부서의 대표가 맡는다.

제82조 (중재기일) 중재요구를 제기하는 일방은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재정은 일반적으로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재재정에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3조 (제소와 강제집행)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재정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 중 일방이 법정기한 내에 제소도 하지 않고 중재재정을 이행하지도 않을 경우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 (단체협약 쟁의처리) 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쌍방 당

사자를 소환하여 조정 처리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1장 감독 및 검사

제85조(노동행정부서의 감독 및 검사) 현금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노동 법률·법규 준수상황을 감독, 검사할 수 있으며 노동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권한을 가진다.

제86조 (공무검사) 현금 이상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의 감독검사 담당자는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노동 법률·법규 준수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검사하며 노동 장소를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현금 이상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의 감독검사 담당자는 공무집행 시 증명서를 제시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7조 (정부감독) 현금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각자의 책임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노동 법률·법규 준수상황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제88조 (노동조합의 감독과 조직, 개인의 고발과 제소) 각급 노동조합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용자의 노동 법률·법규 준수상황을 감독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노동 법률·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과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장 법률 책임

제89조 (근로규칙 위반 처벌) 사용자가 제정하는 근로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이를 경고하고 시정을 명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0조 (연장근로규정 위반 처벌)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이를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91조 (사용자의 근로자 권익침해 처리)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근로자의 임금보수,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도록 명하고, 동시에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연체 지불한 경우
2.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지급을 거절한 경우
3. 근로자의 임금을 현지 최저임금수준보다 낮게 지급한 경우
4. 근로계약 해지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2조 (사용자의 근로보호 규정 위반 처벌) 사업장의 근로안전시설과 근로보건 조건이 국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필요한 작업용 보호용구와 작업보호 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노동행정부서 또는 유관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에 생산중지 및 정비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위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 사고를 발생시켜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 제18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3조 (규정위반 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규칙을 위반하면서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여 중대 사상사고가 발생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4조 (미성년근로자 불법채용 처벌) 사용자가 불법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고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95조 (여성 및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침해 처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와 미성년근로자에 대한 이 법의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고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6조 (인신의 권리침해 처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公安기관은 그 책임자를 15일 이하의 구류, 벌금 또는 경고에 처하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 수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모욕, 체벌, 구타, 불법수색, 구금 등

제97조 (계약무효 손실 책임) 사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고 근로자에게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8조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 지연 손실 배상) 사용자가 이 법에 정하는 조건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노동행정부

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9조 (계약 미해지 근로자 채용 배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여 원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법에 의하여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00조 (보험료 미납) 사용자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기한부납부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서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1조 (검사방해 처벌) 사용자가 노동행정부서와 유관부서 및 그 담당자가 감독권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유없이 저지하거나 고발자에 대해 공격, 보복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나 유관부서가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2조 (계약해지 위반과 기밀유지 사항 위반 손해배상) 근로자가 이 법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에 약정한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3조 (독직처벌) 노동행정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근로자가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104조 (사회보험기금 유용 처벌) 국가공무원과 사회보험기금 관리기관의 직원이 사회보험 기금을 유용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5조 (경합처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처벌규정이 정해 있는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3장 부칙

제106조 (시행절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법 및 해당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한다.

제107조 (효력발생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제1장 총칙

제1조 생산안전사고의 보고와 조사처리를 규범화하고 생산안전사고 책임추궁 제도를 실행하며 생산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安全生产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하여 인명사상 또는 경제손실을 직접 초래한 생산안전사고의 보고와 조사처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환경오염 사고, 핵시설 사고, 국방과 학연구생산 사고의 보고와 처리조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생산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에 의해 초래된 인명사상 또는 직접 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를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나눈다.

1. 특별 중대사고: 30명 이상의 사망, 또는 100명 이상의 중상(급성공업중독 포함, 이하 같음), 또는 1억위안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
2. 중대사고: 10명이상 30명이하의 사망, 또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중상, 또는 5,000만위안 이상 1억위안 이하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
3. 비교적 큰 사고: 3명 이상 10명이하의 사망, 또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0만위안 이상 5,000만위안 이하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
4. 일반사고: 3명 이하의 사망, 또는 10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0만위안 이하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 관리부서는 국무원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고 등급 구분의 보충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이상”은 그 수를 포함하고, “이하”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사고 보고는 적시, 정확, 완전해야 한다. 어떤 기관과 개인도 사고보고 시 지체, 누락, 허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사고 조사처리는 사실입각, 과학존중의 원칙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사고경과·원인·손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사고 성질을 밝히고, 사고책임을 인정하고, 사고의 교훈을 도출하여, 개선조치를 제기하고, 사고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사고조사처리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사고발생지의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나 관련부서의 사고조사처리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며 필요한 편리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 조사처리에 참여하는 부서와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사고 조사처리 업무의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6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사고 조사처리에 참여하여 관련부서에 처리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어떤 단체와 개인도 사고의 보고와 법에 의한 조사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못한다.

제8조 사고보고와 조사처리 중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떤 단체와 개인도 안전생산 감독 관리부서·감찰기관·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사고 보고

제9조 사고발생 후, 사고현장의 관련 인원은 해당 사업장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업장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1시간 내 사고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 관리직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긴급상황 시 사고현장의 관련인원은 사고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생산 감독 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 관리직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는 사고 보고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고정황을 보고하고, 공안기 관·노동보장 행정부서·노동조합·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1. 특별중대사고·중대사고는 급에 따라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까지 보고한다.
2. 비교적 큰 사고는 급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까지 보고한다.
3. 일반사고는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까지 보고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한 관련부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고정황을 보고하며 동시에 당해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한 관련부서 및 성급 인

민정부는 특별 중대사고·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할 관련부서는 사고정황을 보고체계를 초월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할 관련부서는 보고체계에 따라 사고정황을 보고하며 각 단계에 보고하는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고보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고발생 사업장 개황
2. 사고발생 시간·지점·사고현장 정황
3. 사고의 간단한 경과
4. 사고가 기 초래한 혹은 초래 가능한 사상자수(행방불명인 자 포함)와 우선 예상되는 직접경제손실
5. 이미 취한 조치
6. 기타 보고해야 할 정황

제13조 사고보고 후 나타난 새로운 정황은 적시에 보충 보고해야 한다.

사고발생 일부터 30일 내에 사고가 초래한 사상자수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적시에 보충 보고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화재사고는 발생 일부터 7일 내에 사고가 초래한 사상자수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적시에 보충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사고발생 사업장의 책임자는 사고보고를 받은 후 사고 대응 긴급 매뉴얼을 즉시 가동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구조체계를 조직하고, 사고확대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사상과 재산손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15조 사고발생지 관련 지방 인민정부·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할 관련부서는 사고보고를 받은 후 그 책임자가 즉시 사고현장에 가서 구조를 지휘해야 한다.

제16조 사고발생 후 관련사업장과 인원은 사고현장 및 관련 증거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떤 단체와 개인도 사고현장을 훼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애서는 안 된다.

인명구조·사고확대 방지·교통 소통 등의 이유로 사고현장의 물건을 이동시켜야 할 경우 표지·현장개략도·서면기록을 하여 현장의 중요한 흔적이나 물증을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17조 사고발생지 공안기관은 사고의 정황에 의거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입안 수사하고 강제 조치와 조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가 도주할 경우 공안기관은 신속히 추적하여 체포 처리한다.

제18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한 관련부서는 당 직제도를 수립하고 당직전화를 공표하여 사고보고와 고발을 접수해야 한다.

제3장 사고 조사

제19조 특별중대사고는 국무원이나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관련부서가 사고 조사조(調查組)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중대사고·비교적 큰 사고·일반사고는 사고발생지 성급 인민정부·구(區)가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현급 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조사한다. 성급 인민정부·구가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현급 인민정부는 직접 사고 조사조를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관련 부서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사고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명사상을 초래하지 않은 일반 사고에 대하여 현급 인민정부는 사고발생 사업장에 위탁하여 사고 조사조를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상급 인민정부는 필요시 하급 인민정부에서 담당하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일부터 30일(도로교통사고·화재사고는 발생 일부터 7일 내) 내에 사고 사상자 수의 변화로 사고 등급에 변화가 발생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상급 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정부에서 별도로 사고 조사조를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특별중대사고 이하 등급의 사고는 사고발생지와 사고발생 사업장이 동일 현급 이상 행정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지 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조사하며 사고발생 사업장 소재지 인민정부는 인원을 파견해야 한다.

제22조 사고 조사조의 구성은 간소화·효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고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사고 조사조는 관련 인민정부·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감찰기관·공안기관·공회 등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구성하고 인민검찰원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사고 조사조는 관련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초빙할 수 있다.

제23조 사고 조사조 구성원은 사고 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 기술을 지녀야 하고 조사하는 사고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4조 사고 조사조 조장은 사고 조사를 책임지는 인민정부가 지정한다. 사고 조사조 조장은 사고 조사조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25조 사고 조사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발생의 경과, 원인, 인명사상 정황, 직접 경제 손실 조사
2. 사고의 성질과 사고 책임 규명
3.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리 건의
4. 사고 교훈 도출 및 방지와 개선 조치제안
5.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

제26조 사고 조사조는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사고 관련 정황을 문의할 권리가 있고 관련 문건,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주와 개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사고발생 사업장의 책임자와 관련 인원은 사고 조사 기간 동안 임의로 직무를 이탈하지 못하며 수시로 사고 조사조의 문의에 대해 관련 정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사고조사 중 발견한 범죄혐의는 사고 조사조에서 적시에 관련 자료나 사본을 사법기관이 처리하도록 이송해야 한다.

제27조 사고 조사 중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사고 조사 조는 국가 규정 자격을 구비한 기관에 기술 감정을 실시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필요시 사고 조사조는 직접 전문가를 구성하여 기술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기술 감정 소요시간은 사고 조사 기한에 넣지 않는다.

제28조 사고 조사조 구성원은 사고조사 업무 중 성실 공정하고 직분에 충실해야 하며 사고 조사조의 기율을 준수하고 사고조사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사고 조사조 조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고 조사조 구성원은 관련 사고의 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사고 조사조는 사고발생 일부터 60일 내에 사고 조사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고조사를 책임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고조사 보고의 제출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은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사고 조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한다.

1. 사고 발생 사업장 개황
2. 사고 발생 경과와 사고 구조 정황
3. 사고가 초래한 인명 사상과 직접 경제 손실

4.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 성질
5. 사고 책임의 인정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리 건의
6. 사고 방지와 개선 조치

사고 조사 보고는 관련 증거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사고 조사조 구성원은 사고조사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31조 사고 조사 보고가 사고 조사 담당 인민정부에 보고된 후, 사고 조사 업무는 종결된다. 사고 조사 관련 자료는 분류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4장 사고 처리

제32조 중대사고·비교적 큰 사고·일반 사고에 대해 사고 조사 담당 인민정부는 사고 조사 보고 접수 일부터 15일 내 회답을 해야 한다. 특별중대사고는 30일 내 회답을 해야 한다. 특수 정황 하에서 회답시간은 적정하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한은 최대한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 기관은 인민정부의 회답에 의거하여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사업장과 관련 인원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진행하고 사고 책임이 있는 국가 업무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

사고 발생 사업장은 사고 조사를 책임진 인민정부의 회답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고 책임이 있는 인원을 처벌해야 한다.

사고 책임이 있는 인원이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33조 사고 발생 사업장은 사고의 교훈을 받아들여 방지와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 사고의 재발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방지와 개선 조치의 실행 상황은 공회와 근로자의 감독을 거쳐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한 관련부서는 사고 발생 사업장의 방지와 개선 조치 실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4조 사고 처리의 상황은 사고 조사를 담당한 인민정부나 그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관련 부서·기관이 사회적으로 공표한다. 법에 따른 보안사항은 제외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5조 사고 발생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소득의 40%~80%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국가 업무인원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즉각적으로 사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고를 늦게 보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3. 사고 조사 처리 기간 중 직무를 이탈한 경우

제36조 사고 발생 사업장 및 그 관련 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담당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1년 소득의 60~100%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국가 업무 담당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고를 허위 보고하거나 은폐한 경우
2. 사고현장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자금·재산의 이동이나 은닉, 관련 증거·자료를 소각한 경우
4. 조사 거부나 관련 정황과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5. 사고 조사 중 위증이나 타인에게 위증을 사주한 경우
6.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

제37조 사고 발생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사고 발생 시,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2. 비교적 큰 사고 발생 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3. 중대사고 발생 시,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특별중대사고 발생 시,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 사고 발생 사업장 주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발생을 초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 또 국가 업무인원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일반사고 발생 시, 1년 소득의 30% 벌금
2. 비교적 큰 사고 발생 시, 1년 소득의 40% 벌금
3. 중대사고 발생 시, 1년 소득의 60% 벌금
4. 특별중대사고 발생 시, 1년 소득의 80% 벌금

제39조 관련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문과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 주관인원

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즉각적으로 사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고를 늦게 보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허위 보고하거나 은폐한 경우
3. 사고 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4. 사고 조사 중 위증이나 타인에게 위증을 사주한 경우

제40조 사고 발생 사업장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그 관련 허가증서를 일시 압수하거나 회수한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관련인원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안전생산 관련 업무자격과 증서를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형사 처분이나 해직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 집행 완료 후 또는 처분 접수일부터 5년 이내에는 생산 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담당하지 못한다.

사고 발생 사업장에게 허위 증명을 제공한 중개기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 증명서나 관련 인원의 업무자격을 일시 압수하거나 회수한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사고 조사 참여 담당자가 사고 조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해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고 조사 업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 조사 업무에 중대한 누락을 초래한 경우
2. 사고의 책임이 있는 인원을 은닉·비호하거나 기회를 이용하여 보복 하는 경우

제42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지방 인민정부나 관련 부문에서 회답 받은 사고 책임자의 처리 의견을 고의로 연기하거나 실행을 거절한 경우 감찰기관에서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43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벌금의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결정한다. 법률·행정법규에서 행정처벌의 종류·정도와 결정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부칙

제44조 인명사상을 초래하지 않았지만 사회에 악영향이 있는 사고에 대하여 국무원이나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서 조사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기관·공공기관·인민단체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고와 조사 처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5조 특별중대 사고 이하 등급 사고의 보고와 조사 처리는 관련 법률·행정법규나 국무원의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은 1989년 3월 29일 공포한 「특별 중대사고 조사 절차 임시 규정」과 1991년 2월 22일 발표한 「기업근로자 사망사고 보고와 처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안전생산법

(安全生产法)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방지, 감소시키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장(單位, 이하 “생산경영 사업장”이라 한다)의 안전생산은 이 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가 소방안전과 도로 교통안전, 철도 교통안전, 수상 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안전생산관리는 안전제일, 예방 위주의 방침을 견지한다.

제4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이 법과 기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생산 관리를 강화하며, 안전생산 책임 제도를 구축, 보완하고 안전생산의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생산을 확보한다.

제5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진다.

제6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는 법에 의하여 안전생산 보장을 확보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법에 의하여 안전생산 분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의 민주관리와 민주감독 업무에 참가하며, 안전생산 방면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8조 국무원과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고, 각 관련 부문이 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감독 관리상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 국무원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담당 부서는 이 법에 따라 전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이 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직책범

위 내에서 안전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0조 국무원 관련부서는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필요에 따라 법에 의거 관련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적시에 제정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수정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법에 의하여 제정된 안전생산 보장에 대한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와 안전생산 지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 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에 의하여 설립된 안전생산을 위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작업집행준칙에 의하여 생산경영 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그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조 국가는 안전생산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하고, 이 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 사고 책임자에 대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국가는 안전생산 과학기술 연구와 안전생산 선진기술의 응용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전생산 수준을 제고한다.

제15조 국가는 안전생산 여건의 개선, 안전생산 사고의 방지, 응급구호 참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한다.

제2장 생산경영사업장의 안전생산 보장

제16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이 법과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7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 진다.

1. 사업장의 안전생산 책임제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2.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조직하여 제정한다.
3. 사업장의 안전생산 투입에 대한 효력 있는 실시를 보증한다.
4.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을 촉구, 검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제거한다.

5.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처치 예비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6. 생산안전 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한다.

제18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구비하여야 하는 안전생산조건에 소요되는 자금은 사업장의 결정기구, 주요책임자 또는 개인경영 투자자가 보증하고, 동시에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광산, 건축시공 사업장과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사업장은 안전생산 관리기관 또는 전임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상기 항목의 규정 이외의 기타 생산경영 사업장에는 종사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생산 관리기관 또는 전임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종사자가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거나, 국가규정의 관련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공정 기술자에게 안전생산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상기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 기술자에게 안전생산 관리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안전생산에 대한 보증 책임은 여전히 해당 사업장이 부담한다.

제20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는 사업장의 생산경영활동과 상응하는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건축시공 사업의 주요책임자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관련 주관부서의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후에야 직무에 임명될 수 있다. 심사는 무료이다.

제21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가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을 갖추도록 보증한다. 관련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안전조작 규정을 상세히 알도록 하며, 해당 직무의 안전조작 기능에 정통하도록 한다.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제22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신공법, 신기술, 신재료를 채택하거나 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효과적인 안전방호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제23조 생산경영사업장의 특수작업 종사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안전작업 훈련을 받고, 특수작업 조작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특수작업 종사자의 범위는 국무원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서가 국무원

의 관련부처와 함께 확정한다.

제24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공정항목(工程項目, 이하 “건설항목”이라 한다)의 안전 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요 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하여야 한다. 안전시설투자는 건설항목 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 광산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하는 건설항목은 각각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안전조건인증과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건설항목 안전시설의 설계사, 설계기관(업체)은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하는 건설항목의 안전시설설계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심사를 거치고, 심사부문 및 그 심사책임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 광산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하는 건설항목의 시공 사업자는 반드시 비준된 안전시설설계에 의하여 시공하고, 동시에 안전시설의 공정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광산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하는 건설항목은 준공하여 가동 혹은 사용 전에 반드시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설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 생산에 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검수부서 및 그 검수자는 검수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위험요소가 큰 생산경영 장소와 관련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측정검사, 유지보수, 개조와 폐기는 국가 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반드시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와 정비와 함께 정기검사를 하여, 정상 가동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호, 정비 및 측정검사는 기록을 남기고,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0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용한 생명안전에 관계되고, 위험성이 큰 특수설비 및 위험물품의 용기 및 운송기기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전문 생산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측정검사를 통하여 검증기관이 측정검사하고 검증에 합격하여 안전사용증서 또는 안전표시를 취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측정검사, 검증기관은 측정검사, 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 생명안전에 관계되고, 위험성이 큰 특수설비의 목록은 국무원의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집행한다.
- 제31조 국가는 안전 생산에 엄중한 위협을 야기하는 공법, 설비에 대한 퇴출제도를 실시한다.
- 생산경영 사업자는 국가가 명확하게 도태를 명하고, 사용을 금지한 생산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공법,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32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주관부서가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과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따라 심사·허가하고, 동시에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 생산경영 사업주가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며, 믿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는다.
- 제33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중대한 위험(危險源)에 대하여 서류를 만들어 등기하고, 정기 측정검사, 평가, 감독 제어를 실시하고, 동시에 응급예비안을 마련하여 종사자와 관련자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를 알려준다.
- 생산경영 사업주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중대한 위험 및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지방인민정부의 안전 감독관리 책임부서와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제34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동시에 근로자 기숙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생산경영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는 긴급 대피가 가능하고, 분명한 표시가 있으며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장소 또는 근로자 기숙사 출구를 폐쇄하고,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35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폭파, 중장비를 이용한 조립 등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조작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조치를 확보한다.
- 제36조 생산경영 사업자는 종사자가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독려한다. 동시에 종사자에게 작업장소와 직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법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사실대로 고지해야한다.

제37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방호 용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종사자가 사용규칙에 의하여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38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관리자는 사업장의 생산경영 특성에 근거하여 안전생산 상황에 대하여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중에 발견되는 안전문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및 처리상황은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노동방호용품 구비와 안전생산 훈련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40조 2개 이상의 생산경영 사업이 동일한 작업 구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생산안전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정책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동시에 전임 안전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조정을 실시한다.

제41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생산경영 항목, 장소, 설비 등을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진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

생산경영 항목, 장소에 여러 개의 도급 사업자, 임차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생산경영 사업자는 도급 및 임차 사업자와 전문적인 안전생산 관리협의를 체결하거나 도급계약, 임대계약 중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정책을 약정한다. 생산경영 사업자는 도급 및 임차 사업자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제42조 생산경영 사업장에 중대한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조직적인 구조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조사처리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할 수 없다.

제43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44조 생산경영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근로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에 의하여 종사자를 위하여 산재보험 관련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와 어떠한 형식으로 협의를 체결하더라도 종사자의 생산안전 사고 사상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45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는 그 작업장소와 직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
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
하여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46조 종사자는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 중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평,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와 위험작업을 강제로 명령하는 경
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자는 종사자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비평, 고발, 고소를
제기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 위험작업의 강제적인 명령을 거절한 것을 이유
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종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47조 종사자가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
을 정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소를 이탈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긴급 상황 하에서 작업을 정지하거나 긴급
이탈조치를 취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체결한 근로계
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48조 생산안전 사고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 법률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배
상요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49조 근로자는 작업과정에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히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 근로자는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고, 직무에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잘 파
악하며, 안전생산기능을 제고하여 사고예방과 응급처리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1조 근로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 또는 기타 불안전요소를 발견
한 경우 즉시 현장의 안전생산 관리자 또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자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노동조합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주요 공정과 안전시설의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 및 사용에 대하여 감독하고,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생산경영 사업주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주가 규정을 위반하여 지휘하고, 강제로 위험작업에 배치하며 사고가 발
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결책을 건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
경영 사업주는 적시에 연구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미

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을 위험장소에서 철수시킬 것을 권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경영 사업주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법에 의하여 사고조사에 참가하고, 관련부서에 처리의견을 제기하며,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장 안전생산 감독관리

제53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안전생산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직책에 따라 행정구역 내 중대 생산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사를 한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이하“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라 한다)은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이 심사 비준(비준, 심사 비준, 허가, 등록, 인증, 증명서 교부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또는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과 절차에 의하여 엄격히 심사한다. 관련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준을 하거나 검수를 통과시킬 수 없다. 법에 의하여 비준 또는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사업자가 임의로 관련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문이 발견하거나 고발을 접수한 후에 즉시 단속을 하고,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미 법에 의하여 비준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문이 안전생산조건을 재차 구비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5조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는 안전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검수의 실시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심사와 검수를 받는 사업자에게 특정 브랜드 또는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의 안전설비, 기자재 또는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56조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는 법에 의하여 생산경영사업자가 안전생산의 관련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생산경영 사업장에 진입,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며, 관련기관과 인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다.

2. 검사 중에 발견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시정 또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부과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벌의 결정을 한다.
3. 검사 중에 발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중대사고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기 전 또는 제거 과정 중에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에서 작업자를 철수하도록 명령하고, 잠시 휴업하거나 사용정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중대사고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한 후 심사동의를 거쳐야 생산경영과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4.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근거가 있는 시설, 설비, 기자재에 대해서는 차압하거나 압수하고, 동시에 15일 이내에 법에 의하여 처리결정을 한다.

감독검사는 피검사 사업장의 정상적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7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의 감독검사자(이하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라 한다)가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직책을 이행하는 경우에 협조하여야 하고, 거절, 방해할 수 없다.

제58조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는 직무수행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는 감독검사 임무 집행 시 유효한 감독 법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검사 사업과 관계되는 기술적 비밀과 업무상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59조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는 검사 시간, 장소, 내용, 발견한 문제 및 그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검사자와 피검사 사업장의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피검사 사업장의 책임자가 서명을 거절할 경우에는 검사자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에 보고한다.

제60조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는 감독검사 중 상호 협력하여 연합검사를 실시한다. 확실히 필요하여 따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상호 통보하고, 발견한 안전문제를 기타 관련 부문이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시에 기타 관련 부문에 이송하고, 동시에 검사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부문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 및 그 직원의 안전생산 감찰직책의 이행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다.

제62조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을 책임지는 기관은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동시에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을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3조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는 고발제도를 구축하고 고발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주소를 공개하여 안전생산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한다. 접수한 고발사항은 조사 확인 후 서면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비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책임자에 보고하여 서명을 받고, 동시에 실시를 감독·독촉한다.

제64조 모든 사업장 또는 개인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 또는 안전생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에 보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65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소재지역 내의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이 가능한 잠복된 문제 또는 안전생산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인민정부 또는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현금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보고하거나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공을 세운 자를 장려한다. 구체적인 장려방법은 국무원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국무원의 재정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67조 뉴스, 출판, 방송, 영화, TV 등의 매체는 안전생산을 선전, 교육할 의무가 있고, 안전생산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5장 안전생산사고의 응급구조와 조사처리

제68조 현금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행정구역 내의 특대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을 마련하고,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9조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 업체 및 광산, 건축시공 업체는 응급구조 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규모가 작아 응급구조 조직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겸직의 응급구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 업체 및 광산, 건축시공 업체는 필요한 응급구조 기구와 설비를 마련하고, 일상적인 보호, 정비를 실시하여 정상 가동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0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고현장의 관련자는 즉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장 책임자는 사고보고를 받은 후에 신속히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급히 구조대를 조직하여 사고확대를 방지하며, 사상자와 재산손실을 줄이고,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지역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에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하며, 누락된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 보고할 수 없고, 고의로 사고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증거를 없앨 수 없다.

제71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국가관련 규정에 의하여 즉시 사고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사고 상황에 대하여 기만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제72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의 책임자는 중대 생산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현장에 가서 사고구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모든 단체와 개인은 사고구조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모든 편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 사고 조사처리는 사실성과 과학 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적시에 정확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의 성질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교훈을 총괄하며, 정비 조치를 제출하고, 동시에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사고 조사와 처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74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생산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조사결과 책임사고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고단위의 책임을 명확히 조사하며, 동시에 법에 의하여 추궁을 하는 것 외에, 안전생산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심사비준과 감독직책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의 책임도 명확히 조사하여 실책, 독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75조 어떤 단체와 개인도 사고에 대하여 법에 의한 조사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제76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에서 안전생산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는 정기적으로 당해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안전사고상황을 정기적으로 통계분석하고, 동시에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77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직위해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안전생산에 관계되는 사항을 비준하거나 검수를 통과시킨 경우
2. 법에 의하여 비준, 검수를 받지 못한 업체가 임의로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고발을 접수한 후 단속 또는 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의하여 이미 비준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지 않거나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서가 심사·검수를 받는 사업주에게 지정된 안전설비, 기자재 또는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안전생산사항의 심사·검수 중에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받은 비용을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79조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작업을 책임지는 기관이 가짜 증명을 발급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주와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상기 조항의 위법행위가 있는 기관은 그에 상응한 자격을 취소한다.

제80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결책기구, 주요 책임자, 개인 경영투자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상기 조항의 위법행위로 생산안전 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를 직위해지 처분하고, 개인 경영투자자에 대

하여 20,000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이 법이 규정한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상기 조항의 위법행위로 생산안전 사고 발생을 초래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위해지 또는 20,000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가 상기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분 또는 직위해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벌이 완료되거나 처벌을 받는 날로부터 5년 내에는 모든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 직위를 담당할 수 없다.

제82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관리기구 또는 안전생산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건축시공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가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의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 법의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생산의 관련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4. 특수작업 근로자가 규정에 의하여 전문 안전작업훈련을 받고 특수작업 조작 자격 증서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83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정지 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광산건설 사업 또는 위험물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설 사업에 안전시설 설계가 없거나 안전시설 설계가 규정에 의하여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광산건설 사업 또는 위험물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설 사업의 시공단위가 비

준된 안전시설 설계에 의하여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광산건설 사업 또는 위험물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설 사업을 준공하여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안전시설이 검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4. 위험요소가 큰 생산경영 장소와 관련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안전설비의 설치, 사용, 측정검사, 개조와 폐기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6.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 정비와 정기적 측정검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종사자에게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특수 설비 및 위험물품의 용기, 운수도구가 전문자격이 있는 기구에 의하여 측정검사, 검수에 통과되지 아니하고, 안전사용증서 또는 안전표시를 획득하지 아니한 채, 사용에 투입한 경우
9. 국가가 퇴출을 명령하여 사용이 금지된 생산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공법,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84조 법에 의하여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정지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20,000위안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생산경영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20,000위안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할 때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가 법적으로 실시하는 감독 관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위험에 대한 서류작성 등기를 아니하거나 평가, 감시통제를 아니하거나 응급예비안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
3. 폭파, 조립 등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에 전문 관리자가 현장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생산경영 사업주가 생산경영 사업, 장소, 설비 등을 안전생산조건이 미비하거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0,000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산안전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도급 및 임차인과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생산경영 사업주와 도급사업자 및 임차사업자 간에 전문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 임차계약에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도급 및 임차 사업의 안전생산에 대한 통일조정과 관리를 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제87조 2개 이상의 생산경영 사업주가 동일 작업 구역 내에서 상대방의 안전생산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생산경영활동을 실시하고,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전문안전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을 명령한다.

제88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가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거나 근로자 기숙사와의 거리가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생산경영 장소와 근로자 기숙사가 긴급 대피, 분명한 표시 및 소통 유지에 부합하는 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경영 장소 또는 근로자 기숙사의 출구를 봉쇄하고 막는 경우

제89조 생산경영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체결하여 근로자가 안전생산사고로 인한 사상으로 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한 경우에 그 협의는 무효로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 개인경영투자자에 대하여 20,000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근로자가 관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생산규칙제도 또는 조작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주는 이에 대해 비판교육하고, 관련규칙제도에 의하여 처분한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1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가 사업장에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때에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조사 처리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는 경우에는 강등, 직위해지 처분을 하며,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는 자는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가 생산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고, 거짓 보고 혹은 지연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92조 관련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생산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3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이 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이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여도 여전히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쇄한다. 관련부서는 법에 의하여 관련 면허를 취소한다.

제94조 이 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은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서가 결정한다. 폐쇄의 행정처분은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서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결정한다. 구류의 행정처분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처벌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별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95조 생산경영 사업장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원의 사상, 타인의 재산손실

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부담을 거절하거나 책임자가 도망쳐 행방을 감춘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강제 집행한다.
생산안전사고 책임자가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집행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책임자에게 기타 재산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96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품”이란 연소와 폭발이 용이한 물품, 위험화학품, 방사성물품 등 신체안전과 재산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중대한 위험(重大危險源)”이란 장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위험물품을 생산, 운반, 사용 또는 저장하는 동시에 위험물품의 수량 등이 임계수량의 단위(장소와 시설을 포함)와 같거나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업병 예방치료법

(职业病防治法)

제1장 총칙

제1조 직업병 위험을 예방, 억제 및 제거하고, 직업병의 방지와 치료, 근로자의 건강 및 관련된 권익 보호, 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활동에 적용한다.

이 법에서 “직업병”이란 기업, 공공기관(事業單位) 및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이하 “사업자” 혹은 “사업주”라 한다)의 근로자가 직업 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 유해 물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의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서와 함께 규정, 조정하고 공포한다.

제3조 직업병 예방 및 치료 작업은 예방을 주로 하고,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침 하에 분리하여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제4조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직업위생 보호 권리를 영유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업무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근로자가 직업위생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책임제를 구축, 완비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직업병 예방과 치료 수준을 제고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위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사업주는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工傷社會保險)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산재보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직업병 예방과 치료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유익한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의 연구, 개발, 확보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직업병의 메커니즘과 발생법칙에 대한 기초연구를 강화하며, 직업병 방지와 치료 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한다. 효과적인 직업병 예방과 치료 기술, 공법, 자재를 적극 채택하고, 직업병 위험이 심한 기술, 공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거한다.

제8조 국가는 직업위생 감독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국의 직업병 예방과 치료의 감독관리 사업을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직업병 예방과 치료의 관련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행정구역 내의 직업병 예방과 치료의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직업병 예방과 치료의 관련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제9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직업병 예방과 치료계획을 제정하여 이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향(鄉), 민족향(民族鄉), 진(鎭)의 인민정부는 성실하게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고,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의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직업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과 치료의 지식을 보급시키며, 사업주의 직업병 예방과 치료관념을 강화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건강보호 의식을 제고한다.

제11조 직업병 예방과 치료와 관련된 국가 직업위생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 공포한다.

제12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과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직업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성과가 현저한 사업장 또는 개인을 표창한다.

제2장 사전예방

제13조 직업병 위해를 일으키는 사업장의 설립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설립조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업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직업병 위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직업병 위해 방호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생산배치가 합리적이고, 유해작업과 무해작업의 분리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탈의실, 욕실, 임산부 휴식실 등의 보건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설비, 공구, 용구 등의 시설이 근로자의 생리, 심리건강 보호에 부합되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의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기타 요구

제14조 위생행정부서 내에 직업병 위해 사업 신고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공포된 직업병 목록에 열거된 직업병 위해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실대로 위생행정 부서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직업병 위해 사업 신고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제정한다.

제15조 신축, 증축, 개축과 기술개조, 기술도입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에서 직업병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주는 실행검토단계에서 위생 행정부서에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직업 병 위해 예비평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동시에 건설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비평가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예비 평가 보고가 위생행정부서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관련부서는 건설사업 을 비준할 수 없다.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 보고는 건설사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직업병 위해 요소 및 사업장과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위해 유형과 직 업병 방호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 직업병 위해 분류목록과 분류관리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16조 건설사업의 직업병 방호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은 건설사업 공사예산에 산입되 어야 하고, 동시에 주된 공사와 함께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직업병 위해가 엄중한 건설사업의 방호시설과 설계는 위생행정부서의 위생심사를 거 쳐야 하고,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비로소 시공할 수 있다.

건설사업의 준공 검수 전에 건설업체는 직업병 위해 억제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의 준공 검수를 할 때에는 직업병 방호시설은 위생행정부서의 검수를 통 과한 후에야 비로소 정식 생산과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제17조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 직업병 위해 억제 효과평가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자격인정을 받은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이 실시 한다.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의 평가는 객관적,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방사성, 고농도 유해물질 등의 작업에 대하여 특수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3장 근로 중의 방호 및 관리

제19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리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직업위생 관리기관 또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전임 또는 겸직의 직업위 생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업장의 직업병 예방과 치료 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2. 직업병 예방과 치료의 계획 및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3. 직업위생 관리제도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완비한다.
4. 직업위생 기록과 근로자의 건강감독 보호 기록을 마련하고 완비한다.
5.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요소 검사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완비한다.
6. 직업병 위해 사고의 응급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완비한다.

제20조 사업주는 유효한 직업병 방호시설을 채택하고, 근로자에게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은 반드시 직업병 예방과 치료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사업주는 직업병 예방 및 치료,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신기술, 신공법, 신재료를 우선 채택하여 직업병 위해가 엄중한 기술, 공법, 재료를 점차 대체하여야 한다.

제22조 직업병 위해를 일으키는 사업장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공고란을 설치하고, 직업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규정제도, 조작규정, 직업병 위해 사고의 응급조치 및 작업장의 직업병 위해요소 검측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직업병 위해를 엄중하게 일으키는 작업에 대하여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시와 중국어 경고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고문에는 직업병의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구원조치 등의 내용이 게재되어야 한다.

제23조 급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유독, 유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 구급용품, 세척설비, 응급비상통로와 필요한 비상대피구역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사능 사업장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수, 저장에 대하여 사업주는 방호설비와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방사선을 접촉하는 작업인원에게 개인 측량기를 지불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직업병 예방과 치료설비, 응급조치 설비와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에 대하여 사업주는 항상 보호와 검사 수리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그 성능과 효과를 검측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사용을 중지 할 수 없다.

제24조 사업주는 전문인원이 책임지는 직업병 위해요소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스템이 정상운영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작업장의 직업병 위해

요소 검측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측 및 평가 결과는 사업장의 직업위생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업병 위해요소의 검측 및 평가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의 자격인증을 받은 직업위생기술 서비스기관이 실시한다. 직업위생기술 서비스기관의 검측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사업장 직업병 위해요소가 국가 직업위생 표준과 필요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주는 즉시 상응하는 처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전히 국가 직업위생 표준과 위생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때에는 직업병 위해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직업병 위해요소를 처리하여 국가 직업위생 표준과 위생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25조 사업장에 직업병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국어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비의 눈에 띄는 곳에 경고표지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고설명에는 설비의 성능,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안전조작과 보호주의사항, 직업병 방호 및 응급조치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장에 직업병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품,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국어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설명서에는 상품의 특성, 주요성분, 존재하는 유해요소, 발생 가능한 위험의 결과, 안전사용 주의사항, 직업병 예방과 치료 및 응급조치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포장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표지와 중국어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상기 재료를 보존하는 장소는 규정된 위치에 위험물품 표지 또는 방사성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직업병 위해와 관계있는 화학재료를 처음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국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관련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화학재료의 독성감정과 관련 부문의 등기 또는 수입비준을 통과한 서류 등 자료를 보고하고 송부하여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장치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물품의 수입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국가에서 사용금지를 명령한 직업병 위해가 발생 가능한 설비 또는 재료를 생산, 경영, 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직업병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직업병 예방과 치료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단체와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29조 사업주는 채택한 기술, 공법, 재료에 대하여 그것이 발생시키는 직업병 위험을 알아야 하고, 직업병 위험이 있는 기술, 공법, 재료의 위험을 숨기고 채택한 경우에는 초래된 직업병 위해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30조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초빙계약(聘用)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및 결과, 직업병 방호조치와 대우 등을 사실대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근로계약 시 숨기거나 속일 수 없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근로 분야 또는 근로 내용이 변경되어 체결된 근로계약에 고지되지 아니한 직업병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사업주는 상기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 근로계약의 관련 조항의 변경을 협상한다.

사업주가 상기 두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직업병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제31조 사업장의 책임자는 직업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업병 예방과 치료의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며, 법에 의하여 사업장에 직업병 예방과 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배치 전에 직업위생교육과 재직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직업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직업위생 지식을 보급하며, 근로자가 직업병 예방과 치료 법률, 법규, 규정 및 조작규칙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근로자들이 직업병 방호설비와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관련된 직업위생 지식을 학습하고 습득하여야 하고, 직업병 예방과 치료 법률, 법규, 규정과 조작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업병 방호설비와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을 정확하게 사용, 보호하여야 하고, 직업병 위험의 사고 질병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앞의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업병 위험에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작업배치 전, 근무기간 중, 작업이전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업주는 일자리 배치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일정한 작업에 근무가 금지된 근로자를 금지된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 중에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건강을 해친 근로자는 원래의 일자리를 조정하고, 동시에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을 이전하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비준한 의료위생기관이 담당한다.

제3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건강감호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규정된 기간 동안 적절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직업건강감호서류는 개인과 관계된 근로자의 근무경력, 직업병위해 접촉경력, 직업건강검사결과와 직업병진료 등 관련된 개인건강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날 때에는 본인의 직업건강감호서류 사본을 취득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사실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사본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때에는 사업주는 즉시 응급 및 통제조치를 취하고,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와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부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조사 처리한다. 필요한 때에는 임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급성 직업병 위해를 당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구급치료하고, 건강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실시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담당한다.

제35조 사업주는 미성년근로자를 직업병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여성근로자를 본인과 태아, 영아에 위해가 있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제36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위생 보호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1. 직업위생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2.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료, 회복 등 직업병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요소와 위해 결과, 취하여야 할 직업병 방호조치를 알 권리
4. 사업주에 직업병 방지와 치료요구에 부합되는 직업병 방호설비와 개인이 사용

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의 제공과 작업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직업병 예방과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고발, 고소를 제기할 권리
6. 직업병 방호조치가 없는 작업의 실시를 요구하는 규정위반 지휘와 강요를 거부할 권리
7. 사업장의 직업위생 업무의 민주관리에 참여하고, 직업병 예방과 치료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기 조항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그 임금, 복지 등 대우를 낮추거나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지, 중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37조 노동조합은 사업주가 직업위생 선전교육과 훈련을 전개하도록 독촉하고 협조하며, 사업장의 직업병 예방과 치료 업무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이 보고한 관련된 직업병 예방과 치료문제에 대하여 협조를 하고, 해결을 독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업주가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엄중한 직업병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부 관련부서에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다. 직업병 위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조사 처리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위협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주에 근로자들을 위험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업주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요구에 의하여 직업병 위해의 예방과 처리, 작업장 위생검측, 건강검사와 직업위생교육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산원가 중에서 사실대로 지출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직업병 진단과 직업병 환자의 보장

제39조 직업병 진단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비준한 의료위생기구가 담당한다.

제40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법에 의하여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관에서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 직업병 진단표준과 직업병 진단, 감정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직업병 부상등급의 감정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함께 제정한다.

제42조 직업병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직업경력
2.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과 현장 위해조사 및 평가
3. 임상 시험과 보조검사 결과 등

직업병 위해요소와 환자 임상시험 간에 필연적 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병을 초래한 기타 요소를 배제하고, 직업병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관이 직업병을 진단할 때에는 직업병 진단 자격을 취득한 3명 이상의 전문의를 조직하여 집단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는 진단에 참여한 의사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고,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행정기관의 심사 도장이 있어야 한다.

제43조 사업주와 의료위생기관은 직업병 환자 또는 직업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업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소재지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행정부서와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행정구역내의 직업병 통계보고 관리 작업을 책임지고, 규정에 의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경우에는 진단을 한 의료위생기관 소재지의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병 진단 분쟁은 관계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당사자가 관계지역의 시급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의 감정 결론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 재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축하고, 직업병 분쟁에 대한 진단감정이 필요할 때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관련 위생행정부서에 위탁하여 전문가 그룹에서 무작위로 택하는 방식으로 진단감정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를 확정한다.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포한 직업병 진단표준, 직업병 진단과 감정방법에 의하여 직업병 진단감정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직업병 진단

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감정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47조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단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자와 사적인 접촉을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을 없으며,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회피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련안건을 접수하여 직업병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법에 의하여 설립한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 감정에 참가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48조 직업병 진단 및 감정 시 직업위생과 건강 감호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는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관련기관도 직업병 진단과 감정과 관계가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 의료위생기관은 직업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사업주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업병 의심환자에 대하여 즉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병 의심환자를 진단하거나 의학적인 관찰기간 중에는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직업병 의심환자의 진단, 의학적인 관찰기간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50조 직업병 환자는 법에 의하여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 대우를 받는다.

사업주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환자가 치료, 회복 및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원래의 작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직업병 환자에 대하여 원래의 작업을 떠나도록 하고, 타당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당한 작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1조 직업병 환자의 진료, 치료와 회복 비용, 그리고 장애가 남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관련된 산재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52조 직업병 환자는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받는 것 이외에 민사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에 배상 요구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53조 근로자가 직업병의 진단을 받았으나, 사업주가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와 생활보장은 가장 최근의 사업주가 부담한다. 가장

최근의 사업주가 직업병이 이전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54조 직업병 환자가 작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받던 대우는 변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분리,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업병 위해와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환자를 타당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55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국가 직업위생표준과 위생필요에 의하여, 또한 직책 구분에 의하여 직업병 예방과 치료 업무, 직업병 위해 검측과 평가 업무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56조 위생행정부서가 감독검사 직책을 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검사 사업장과 직업병 위해 현장 진입, 상황파악, 조사증거채취
2.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채집한 건본의 조사 및 복제
3.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위법행위증지명령

제57조 직업병 위해 사고를 발견하거나 위해 상태에 직업병 위해 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생행정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업병 위해 사고를 초래하는 작업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
2. 직업병 위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직업병 위해 사고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재료와 설비의 봉인
3. 직업병 위해 사고현장의 통제

직업병 위해 사고 또는 위해 상태가 유효하게 통제된 후에는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통제조치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은 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감독집행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은 본분에 충실하고,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며, 법 집행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장과 관련된 비밀은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9조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피검사 사업장은 검사를 받아들이고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할 할 수 없다.

제60조 위생행정부서와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건설사업의 관련증명문서와 품질증명문서를 발급하거나 비준하는 행위
2. 기 취득한 관련증명문서에 대한 감독검사직책의 불이행
3. 사업장에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고, 직업병 위해 사고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 즉시 법에 의하여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4. 기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

제61조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은 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거쳐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의 정치, 업무자질을 제고하며,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한 내부 감독 제도를 구축·완비하고, 집행인원이 법률 및 법규를 집행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62조 건설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는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을 넘겨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관련된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거하여 건설 중지와 폐쇄 명령을 제청한다.

1. 규정에 의한 직업병 위해 예비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업병 위해 예비 평가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직업병 위해 예비 평가 보고가 위생행정부서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공을 한 경우
2. 건설사업의 직업병 방호시설이 규정에 의한 주된 공정과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지 아니한 경우
3. 직업병 위해가 엄중한 건설사업의 직업병 방호시설 설계가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기준시공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규정에 의한 직업병 방호시설의 직업병 위해 통제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위생행정부서의 검수를 거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임의로 사용에

투입한 경우

제63조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 원인 검측과 평가 결과가 보존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제19조가 규정한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의한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련 규장제도, 조작규정, 직업병 위해 사고 응급조치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4. 규정에 의한 근로자 직업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지 않거나 근로자 개인의 직업병 방호에 대하여 지도, 감독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직업병 위해와 관련 있는 화학재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규정에 의한 독성감정재료와 관련부서의 등록 또는 수입 비준 문서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 사업주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동시에 2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의한 직업병 위해 사항을 즉시, 사실대로 위생행정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문인원이 책임지는 직업병 위해 요소의 일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시스템이 정상적인 검측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직업병 위해의 실제 상황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4. 규정에 의한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고 직업건강 감호서류를 마련하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제65조 사업주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00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관련된 인민정부에 폐쇄명령을 제청한다.

1. 작업장의 직업병 위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을 초과한 경우

2. 직업병 방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직업병 방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이 국가의 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직업병 방호설비와 응급구원시설,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유지·보호와 검사, 검수,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직업병 위해 요소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작업장이 직업병 위해 요소를 처리하였음에도 여전히 국가 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6. 규정에 의한 직업병 환자와 직업병 의심환자의 진료를 실시하도록 배려하지 아니한 경우
7. 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응급구원과 통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즉시 하지 아니한 경우
8.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직업병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표시와 중국어 경고설명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위생행정부서의 감독검사를 거절한 경우

제66조 사업장에 직업병 위해가 발생 가능한 설비 및 재료를 제공하고 규정에 의한 중국어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50,000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사업주와 의료위생기관이 규정에 의한 직업병과 직업병 의심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날조한 경우에는 2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해직처분을 한다.

제68조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기한 내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30,000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인민정부에 폐쇄를 명령하도록 제청한다.

1.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기술, 공법, 재료를 숨기고 생산에 채용한 경우
2. 사업장의 직업위생의 실제 상황을 숨긴 경우
3. 급성 직업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독, 유해 사업장과 방사성 사업장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수 및 저장이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에서 명확히 사용금지를 명령한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설비 또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직업병 방호조건이 없는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직업병 방호조건이 없는 사업장이나 개인이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받아들인 경우
6. 직업병 방호설비나 응급구원 설비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정지시킨 경우
7.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 직업에 대해 금기사항이 있는 근로자, 미성년근로자 또는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여자근로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이나 금기 작업에 배치한 경우
8. 근로자들이 직업병 방호조치가 없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위반한 지휘를 하거나 강제 명령을 한 경우

제69조 국가에서 사용을 명확히 금지한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 있는 설비나 재료를 생산하고 경영하며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0조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이하 "위생행정부서"라 함)가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관련된 인민정부가 폐쇄를 명령하도록 제청하고, 동시에 10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사업주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직업병 위해 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직업위생기술서비스 자격인정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직업위생기술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의료위생기관의 비준 없이 임의로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즉시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이면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

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해직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한다.

제73조 직업위생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구와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관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즉시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인증 또는 비준기관이 그 상응한 자격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해직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자격인정 또는 비준 범위를 초과하여 직업위생기술서비스 또는 직업건강검사와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
2. 이 법 규정에 의한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의 증명문서를 발급한 경우

제74조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직업병 진단 분쟁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수령한 재물을 몰수하며, 동시에 3,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담당한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 구성인원의 자격을 취소하며,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설립한 전문가 그룹에서 제명한다.

제75조 위생행정부서가 규정에 의한 직업병과 직업병 위해 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상급 위생행정부서는 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하며, 경고를 한다. 허위보고, 은폐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의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해직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76조 위생행정부서 및 직업위생 감독집행 담당자가 이 법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병 위해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의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7장 부칙

제77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업병 위해”란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병 위해 요소는 직업 활동 중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한 화학, 물리, 생물 요소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기타 직업 유해 요소를 포함한다.

“직업금기”란 근로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병 위해 요소에 접촉할 때 일반 직업 군중에 비해 보다 쉽게 직업병 위험을 받고 직업병에 걸리거나 원래 있던 질병의 상황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작업종사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건강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수 생리 또는 병리 상태를 말한다.

제78조 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 이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직업병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직업병 예방과 치료활동은 이 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법의 집행을 참조하는 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

제79조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중국편 -

2013년 11월 초판 인쇄

2013년 11월 초판 발행

발행인 : 백헌기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등록번호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TEL : (032)510-0742~7

FAX : (032)510-8482

당 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